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2008. 12

김승래 · 김형준 · 이철인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최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조세 및 재정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대한 논의와 세제개편의 전체적인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새 정부 세제개편의 정책기조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세목별 감세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소득세, 법인세, 중부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 방안의 세부담 귀착에 대한 역진적 측면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서민 및 중산층 지원 등을 위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율 조정을 통한 현행 조세체계의 변화의 방향 설정 및 수준은 효율성 및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단순성(simplicity)의 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직·간접세의 비중 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조세체계의 적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목별 세부담의 변화는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조세개편이 효율 및 형평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소득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조세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나 국가적 재원 조달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와 동시에, 관련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에 대하여 균형 있는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김승래·김형준 박사와 성균관대학교의 이철인 교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저자들은 본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1차 및 2차 중간보고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에게 우선 감사하고, 관련 세미나 및 최종 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도움을 준 강미정 주임연구원, 최달래 연구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왜곡을 심화시키고 자본과 고급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야기하는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소비세제의 비중을 제고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저성장시대의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 조세경쟁의 심화와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환경관련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 및 수준을 검토하는 문제는 조세 및 재정정책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이론적인 측면 이외에도, 경제 성장이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선택적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최근 급속한 개방화와 양극화 심화 및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공평과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및 각종 요인들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체계는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조세체계가 적정수준과 다를 경우 해당 세목별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국가적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엄밀한 조세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이나 ITC지수에만 의존하여 국제적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Ballard et al(1985), 김성태 외(1999), 김승래·김우철(2007) 등의 효율성 측면의 비용분석에서 나아가 전반적 조세체계의 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먼저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세목의 한계초과부담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및 단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2조 3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뚝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 세수 대비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수의 손실은 초래되지만,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적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킨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률적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 크기가 큰 대기업과 자본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및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또한 향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관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다른 세목 조정과 함께 세수중립적(revenue-neutral)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 정책과의 조합에 의해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종소비자의 후생변화로 추정한 김승래·김우철(2007)의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MEC) 승수를 이용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대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또한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현행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지니계수가 각각 0.0264%(약간 누진적), 0.1999%(다소 누진적)가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약간 역진적)가 늘어나 직접세 대비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에 이로 인한 귀착효과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현행 소득세에 대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법인세에 대한 일률 감세로부터 유발되는 부(-)의 소득형평성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할 정도의 미약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명확함을 의미한다. 오히려 취약계층 보호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세율 조정보다는 역진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을 통하여 현행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이에 따르면 일률적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률적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 법인세가 기타 세제에 비하여 조세의 형평성 및 단순성 측면에서 약간의 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중에서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소득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분배적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일차적인 정책적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에 조세누진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적인 세부담 조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주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20
II. 조세체계 추이 및 국제비교	23
1. 조세체계 현황 및 추이	24
가. 소득세제	25
나. 법인세제	29
다. 소비세제	33
2. 조세체계의 국제비교	39
가. 세수구조 현황	39
나. 외국의 조세체계 개편 동향	45
III. 세목간 적정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54
1. 직접세 · 간접세 간 비중에 대한 논의	55
가. 논의의 기본 흐름	55
나. 자발적 선택(self-selection)을 고려한 논의(Ⅰ)	58
다. 자발적 선택과정에서의 논의(Ⅱ): 최근의 논의	62
라. 기타 논의	70
마. 논의의 요약	76
2. 탈세와 최적조세체계	77

3. 소득세와 소비세의 적정 배분 수준에 대한 논의	89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91
1. 효율성 측면	95
2. 형평성 측면	105
가. 조세귀착의 이론적 배경	111
나. 주요 세목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	117
3. 단순성 측면	127
4. 주요 세목별 비교 종합	130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40
참고문헌	145
<부 록>	
A.1. 일반균형 조세귀착 분석의 필요성	153
A.2. Harberger-Shoven-Whalley형 귀착모형의 기본 구조	154

표 목차

<표 II- 1> 우리나라의 직·간접세 비중(1970~2006)	24
<표 II- 2> 경상GDP 대비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비중	25
<표 II- 3> 소득세율의 변화	26
<표 II- 4> 국민계정 대비 소득과약 비율(2005년 귀속)	27
<표 II- 5> 각종 공제액의 규모(2006년 귀속)	29
<표 II- 6> 법인세수의 변천	30
<표 II- 7> 법인세율의 변화	30
<표 II- 8> 주요국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수 대비) 비교	31
<표 II- 9>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32
<표 II-10>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의 비중	34
<표 II-11>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와의 비교 ..	37
<표 II-12>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38
<표 II-1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변천	40
<표 II-1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6) ..	42
<표 II-15> OECD 국가의 주요 세목별 세수구조	43
<표 II-16> 주요 OECD 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6)	44
<표 II-17> 주요 국가별 소득세 최고세율 및 적용범위(2006)	46
<표 II-18> 법인세 최고세율(2007)	46
<표 II-19> 주요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의 국제비교	48
<표 II-20>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49
<표 II-21> 독일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의 세율 인상 변천	50
<표 II-22>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의 세율 인상	52

<표 IV- 1> 주요 세목별 경제적 효과의 정성적 비교(tax matrix)	94
<표 IV- 2> 주요 세목별 조세의 효율비용(MEC) 추정치	98
<표 IV- 3> C-효율성 비율(2003)	103
<표 IV- 4>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OECD) ..	106
<표 IV- 5> 법인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120
<표 IV- 6> 소득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121
<표 IV- 7> 소득 10분위별 평균소비성향(2007)	123
<표 IV- 8>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의 품목별 조세역진성 완화도	125
<표 IV- 9> 부가가치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127
<표 IV-10>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법인) ..	128
<표 IV-11> 본 연구와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법인의 비교	128
<표 IV-12>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법인)	129
<표 IV-13>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129
<표 IV-14>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130
<표 IV-15>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의 효율비용 효과 비교	135
<표 IV-16>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비교	136
<표 IV-17>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율성 · 형평성 · 단순성 성과 비교(‘조세-성과 행렬’ 종합)	138
<부표 1> 업종별 부가가치세 일반균형 I-O실효세율 변화 (기준세율 1%p 인상)	159
<부표 2> 소득 10분위별 소득유형 분포	161
<부표 3> 소득세 1%p 인상의 세부담 변화	162

그림 목차

[그림 II-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비교	33
[그림 II-2]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2007)	35
[그림 II-3] OECD 국가의 세수구조 추이(1975~2006)	43
[그림 III-1] $\delta^* < \bar{\delta}$ 의 경우	85
[그림 IV-1] 주요 세목별 세율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01
[그림 IV-2]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	110
[그림 IV-3] 세목별 증세의 경제적 후생효과	112
[그림 IV-4] 법인세 1%p 인상 귀착효과의 구조	119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 국가의 조세체계(이하 조세체계라는 용어는 tax mix를 의미)의 적정화 방향 및 수준을 검토하는 문제는 조세 및 재정정책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이론적인 측면 이외에도, 경제성장이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선택적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나라에서의 세제개편 경험도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개방화의 빠른 진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조세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공평과세를 구축하기 위한 조세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및 각종 요소들을 감안하여 조세체계는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조세체계가 적정수준과 다를 경우 해당 세목별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엄밀한 조세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이나 ITC지수에만 의존하여 국제적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하여 논의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Ballard et al(1985), 김성태 외(1999), 김승래·김우철(2007) 등의 한계효율비용의 측정에서 나아가 전반적 조세체계의 조정방향을 설정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특히 이러한 평가의 기본 원칙으로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단순성(simplicity)의 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직·간접세의 비중 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조세체계가 성장 등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문헌 및 주요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조정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 OECD 등 국제기구가 실시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욱이, 현실의 조세제도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대분류에 의거한 제도 운용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세목 간의 적정비율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그리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적정 비율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tkinson and Stiglitz(1969)는 일정한 누진도를 달성할 수 있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율이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Atkinson and Stiglitz(1969)에서와는 달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을 정의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Boadway et al.(1994)은 부문간 납세준응도가 상이한 경우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된다는 것을 보였으며, Lee(2008)는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며(Naito, 1999 등) 자산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된다는 주장이 있다(Cremer, 2003 등). 즉, 최근에는 Atkinson and Stiglitz(1969)와는 달리 실업, 탈세, 정보의 불완전성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사이의 바람직한 비율이 유일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Atkinson and Stiglitz(1969)의 이상적인 경제에서와는 달리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경제에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배분 비율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382개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약 60%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업이나 탈세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Boadway et al.(1994) 등의 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탈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배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Lee(2008)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특히 Lee(2008)는 실업과 이에 따른 복지지출의 정도에 따라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바람직한 배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의 복지지출의 확대가 이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배분 비율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소득세, 법인세, 중부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 방안의 세부담 귀착에 대한 역진적 측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민 및 중산층 지원 등을 위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세목별 세율 조정에 따른 수직적 형평성(equity) 효과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는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체계의 변화 방향 설정 및 수준을 효율성,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비교하는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적정화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체계 조정의 국제추세 분석 및 문헌조사, 이론적 측면의 논의와 분석 그리고 조세체계 조정의 경제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득세, 소비세 등 직접세 및 간접세 조정의 적정화 방향 및 그 장단점을 검토한다¹⁾.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에 대한 사례 및 추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소득세 및 소비세 조정의 시사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적정 배분에 관하여 탈세 및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현행 세목간 과세비율과의 비교·평가를 행하며 적정 배분의 방향 및 수준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한다. 기존의 조세체계 적정화의 이론 검토와 나아가 탈세나 실업 등이 존재하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들 모형을 확장하여 탈세 및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의 조세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부문간 납세순응도의 차이나 실업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의 조세체계 적정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한다. 특히 Atkinson and Stiglitz 이후 소득과 세와 소비과세 간의 적정 비율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들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탈세나 실업 등이 있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들 모형을 확장한다.

이러한 국제비교 분석 및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3대 기간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체계 조정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각종 조세체계의 변화가 효율성, 형평성 및 단순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이러한 조세체계 조정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세부담 귀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rberger(1961), Shoven and Whalley

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적정화의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비교 및 문헌분석, 이론적 논의 및 실증적 분석이라는 서로 보완적인 접근방법을 병렬적으로 시도하였다.

(1984) 또는 Piggott and Whalley(1985)형의 일반균형적 관점의 귀착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이상의 국제비교 및 문헌분석, 이론적 논의 및 실증적 분석이라는 서로 보완적인 접근방법에서 시도된 결과를 정리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이러한 기초적인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조세체계 (tax mix) 개편의 성장이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로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향후 세제개편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조세체계 추이 및 국제비교

조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수의 확보이며, 이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수입을 확보하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당국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좁은 세원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세원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에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세원별로 보면 기업의 생산활동보다는 개인의 소비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으므로 효율적이고,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에, 소득보다는 소비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난 20여년간 소비세제의 비중을 제고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세제개혁에서 예외 없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고, 지난 1990년대 이전에는 35%였던 법인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등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1970년대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추이 및 다른 국가들의 개편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경제적 논리에 충실한 과세체계의 확립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본다.

1. 조세체계 현황 및 추이

우선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에서 차지하는 직·간접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수는 직접세보다는 소비세를 위주로 하는 간접세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후에 간접세 비중이 감소하고 직접세 비중이 점점 커져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거의 비슷해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오히려 직접세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동안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간접세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세부담의 역진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표 II-1> 우리나라의 직·간접세 비중(1970~2006)

(단위: %)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06
직접세	39.5	36.9	39.3	49.5	54.7	51.2	50.3	50.6	53.1	53.6	55.2	57.3
간접세	60.5	63.1	60.7	50.5	45.3	48.8	49.7	49.4	46.9	46.4	44.8	42.7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그리고 세수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교해 보면, 2000년 이후 경상GDP 대비 세수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큰 변화 없이 4% 중반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 부담은 경상GDP 대비 세수비중이 3%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에는 4%로 증가하였다. 또한 법인세 부담도 3% 중후반의 수준에서 2006년에는 3.8%의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전년도 대비 25.3%와 20.6%의

II. 조세체계 추이 및 국제비교 25

세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표 II-2> 경상GDP 대비 주요 세목별 조세부담 비중

(단위: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 득 세	3.3	3.1	3.2	3.3	3.3	4.0
법 인 세	3.0	3.1	3.9	3.5	4.0	3.8
부가가치세	4.2	4.6	4.6	4.4	4.5	4.5
조세부담률	19.7	19.8	20.4	19.5	20.1	21.2
국 세 비 중	77.8	76.6	77.6	77.5	78.0	76.8

주: 1) 2006년 통계는 잠정치

2)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 세액에 세액의 10%가 부가되는 주민세를 포함하는 금액

3) 국세비중은 총조세(=국세+지방세)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호

가. 소득세제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등 장기형성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시재산 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체적인 소득유형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서 2002년과 2005년 세율을 인하하여 현행세율(8~35%)에 이르고 있다. 4단계 과세구 간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6단계, 영국의 3단계, 독일의 3단계²⁾, 일본의 6단계³⁾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나, 유럽 국

2) 세율 0%가 적용되는 구간을 포함할 경우에는 4단계이다.

가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의 과세구간을 가지며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35%)은 OECD 국가 2005년 평균(36.0%)과 비슷한 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7년부터 40%(이전 37%)로 인상되었다.

<표 II-3> 소득세율의 변화

(단위: %)

과세표준	1996~2001	2002~2004	2005~현재
1천만원 이하	10	9	8
1천만~4천만원	20	18	17
4천만~8천만원	30	27	26
8천만원 초과	40	36	35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그리고 과세표준구간은 1996년 이후 기준금액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으나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기준금액이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과표소득의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94배 수준으로 일본 4.62배, 독일 2.18배, 프랑스 2.02배, 그리고 영국 1.70배보다 높은 수준이나 미국 7.99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06년도 기준 소득세수는 31.0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138.0조원)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득세 납세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과세미달자에 해당되며 2005년 귀속소득 기준 자영업자의 경우 44.7%, 근로자의 경우 48.7%가 과세 미달로 추정된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

3) 2007년부터 과거 10여년 유지된 4단계 최고세율 37%에서 6단계 최고세율 40%로 전환하였다.

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근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공제 허용으로 중간소득 이하의 대부분이 면세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분류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자 10.4%가 종합소득세 세수의 90.6%를 부담할 정도로 소수가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담하여 세부담이 지나치게 누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상위 소득자 10.2%가 75.7%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세율의 누진도가 낮아서라기보다 높은 면세점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세 과세기반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소득과약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득유형별 국민계정 대비 소득과약 비율은 2005년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72.6%, 사업소득 4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과약률은 사업소득의 투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과세미달자의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표 II-4> 국민계정 대비 소득과약 비율(2005년 귀속)

(단위: 조원, %)

구 분	국민계정(A)	신고소득(B)	비율(B/A)	비 고 (소득차이 원인)
근로소득 (피용자 보수)	365.0	279.4	72.6	일용 근로소득 미과약
사업소득 (개인영업 잉여)	79.7	38.1	41.8	현금거래분 미과약 과세미달자 미신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한국은행 Homepage, 「경제통계시스템」

사업소득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가 차감된 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존재하

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체계에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특별공제는 대부분 근로소득에만 적용한다. 그리고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나 사업소득자에게는 일부 적용된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결혼·이사·장례비공제, 표준공제가 있으나 그 중 사업소득자에게는 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만 허용된다. 그리고 표준공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기타 사업소득자는 연 60만원으로 차등하여 공제된다. 인적공제는 표준적인 공제방식으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체적 혹은 사회적 특수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공제, 그리고 다자녀 추가공제로 구성된다. 그 외 소득공제 항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특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제도는 비교적 단순한데, 이중과세의 조정, 근로소득자 지원, 재해손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기타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의 규모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소득의 62.3%로 매우 높고 종합소득자는 22.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소득종류별 소득과약 정도를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소득공제제도에 기인한다. 반면 세액공제액의 결정세액 대비 비중은 종합소득이 1.8%로 근로소득의 0.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중과세조정은 종합소득신고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과약률을 높이기 위해 기장신고 유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II. 조세체계 추이 및 국제비교 2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문제점은 가구규모별 세부담 구조의 불균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규모별 세부담 구조의 불균등은 가구규모별 면세점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비해 균형 있게 설계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표 II-5> 각종 공제액의 규모(2006년 귀속)

(단위: 조원)

	총소득(A)	소득공제(B)	결정세액(C)	세액공제(D)	비중(%)	
					B/A	D/A
근로소득	317.9	198.2	11.6	2.2	62.3	0.7
종합소득	65.0	14.8	9.2	1.2	22.8	1.8

주: 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포함한 것이며 결정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나. 법인세제

1950년 법인세가 독립세목으로 도입된 이후 법인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말까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6년 현재 1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 법인세수는 전년도 29조 4,000억원보다 무려 20.6%가 증가한 35조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현재 2단계 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 전체의 평균적인 명목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은 지방세인 주민세 법인세할을 포함하여 27.5%로서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16위로 중간 수준이다. 법인세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미만에는 대해서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부과하고 있다.

<표 II-6> 법인세수의 변천

(단위: %)

	법인세 세수/조세수입	법인세 세수/경상GDP
1980	7.4	1.3
1985	8.3	1.4
1990	9.7	1.8
1995	12.0	2.3
2000	15.7	3.4
2001	13.9	3.0
2002	14.2	3.1
2003	17.3	3.9
2004	16.2	3.5
2005	18.2	4.0
2006	18.0	3.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7> 법인세율의 변화

(단위: %)

과세표준	1989~1993	1994~2001	2002~2004	2005~현재
1억원 이하	20	18→16	15	13
1억원 초과	30	32→28	27	25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그리고 법인세 부담은 명목세율 외에도 결손금 이월공제, 감가상각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와 조세감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감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법인과 관련된 감면제도는 그 목적에 따라 투자지원,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조정 지원, 지방이전 지원, 기타로 구분 가능하며, 감면 항목 및 실적 측면에서 투자지원 목적의 감면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1997년 1조 5천억원 규모인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감면액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7조원 규모에 이른다. 조세지출 계산에 포함시키는 항목의 범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감면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법인세 감면율은 평균 35%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7% 수준에 비해 2배 규모이다.

<표 II-8> 주요국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수 대비) 비교

(단위: %)

국가	2001	2002	2003	2004
캐나다	39.2	34.0	30.7	28.5
영국	53.0	53.7	54.1	55.1
미국	32.2	36.2	29.3	23.4
한국	18.9	16.3	16.5	17.2

자료: 각국의 조세지출보고서

또한 우리나라의 실효 세부담이 낮지 않다는 측면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는 최근에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개별 기업자료를 통한 평균유효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최근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투자공제제도와 감가상각제도의 차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9>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G7 국가 (독일 제외)	미국	34.89	35.31	35.24	32.13	31.88
	영국	30.13	27.89	28.87	30.48	31.32
	이탈리아	39.13	44.46	33.71	36.31	37.47
	일본	52.24	47.73	41.39	44.86	43.70
	캐나다	36.05	35.12	32.48	31.57	28.37
	프랑스	34.75	33.55	34.66	37.29	28.48
한국		29.18	24.37	27.02	25.89	26.93
동아시아국가	대만	16.90	16.78	16.10	15.72	12.74
	싱가폴	22.03	21.01	22.93	24.43	17.43
	태국	18.12	22.15	22.99	24.31	20.45
	홍콩	6.27	14.03	18.83	18.29	2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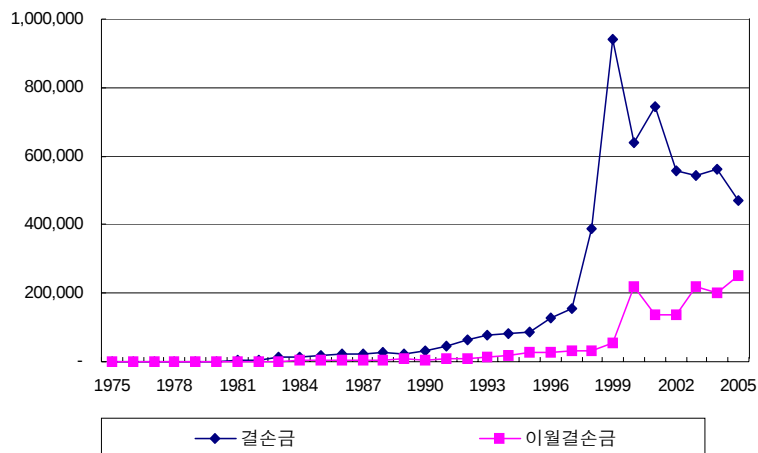
자료: 박기백·김진(2004)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이나, 실효세부담이 낮지 않은 것은 연결납세, 이월공제, 감가상각 등 세율 이외의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을 의미한다. 명목세율과 평균유효세율과의 차이는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각종 감면제도에 기인한다. 명목세율보다 평균유효세율이 더 낮은 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영향이 크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도 작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월결손금제도는 결손금의 공제시한이 짧고, 소급공제의 적용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월결손금은 평균유효세율을 2005년에 4.22%p 낮추어 주는 효과를 보인다. 2000년 이후 결손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 시한이 너무 짧고,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림 II-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비교

(단위: 억원)



다. 소비세제

소비세는 소비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세금이지만, 보통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그 후 하락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30~4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중후반까지 소비세는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으로 8개 세목을 하나로 묶어 소비세체계가 간소화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소비세제 중 부가가치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 세수의 3대 세목

을 구성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 약 26조원이 징수된 이후 2002년에는 약 22.3%의 세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3~5%의 비율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38조원의 세수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비세이며, 2001년 이래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서, 3대 세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10>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의 비중

(단위: 10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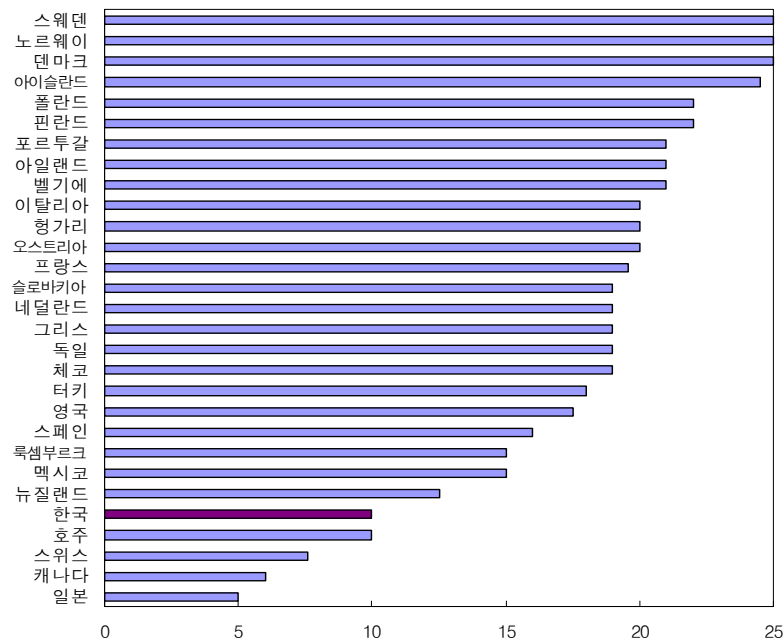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GDP	622,123	684,264	724,675	778,445	806,622	847,876
국 세	95,793	103,968	114,664	117,796	127,466	138,044
내 국 세	74,027	82,226	92,231	95,276	104,428	113,880
간 접 세	35,081	40,606	42,514	43,037	45,483	47,928
부가가치세 (전년 대비 증가율)	25,835	31,609 (22.3)	33,447 (5.8)	34,572 (3.4)	36,119 (4.5)	38,093 (5.4)
부가가치세/GDP	4.2	4.6	4.6	4.4	4.5	4.4
부가가치세/국세	27.0	30.4	29.2	29.3	28.3	27.5
부가가치세/내국세	34.9	38.4	36.3	36.3	34.6	33.4
부가가치세/간접세	73.6	77.8	78.7	80.3	79.4	79.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로 2007년 현재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 약 17.7%에 비하여 크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표준세율과 그보다 낮은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품목을 따로 두는 복수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⁴⁾.

[그림 II-2]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2007)

(단위: %)



자료: OECD(2008)

- 4)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의 세율은 5~25% 수준이며, 일본이 5%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덴마크,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25%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일본, 캐나다, 스위스 다음으로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표준세율의 단순평균이 부가가치세 최초 도입 시 12.5%에서 1994년 17.5%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17.7%에 이른다. OECD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왔으나 체코,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사례도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세율 변화가 등락을 보이다가 프랑스는 최근에 인하하였고, 네덜란드는 반대로 인상한 예이다. 세율 인상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1976년부터 30년간 OECD 평균 세율 인상은 2%p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사업자의 부담이 된다. 이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면세제도의 정책적 근거로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사회적 관점에서 권장되어야 될 재화(도서 등)와 공급부족분 예상 재화(공익 목적의 의료용역 등), 생산요소와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이자 등) 및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용역(금융용역 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일부 품목의 면세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왜곡 가능성과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중간단계의 사업자에 대한 면세로 누적과세 현상이 발생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등으로 인해 세법의 규정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면세대상이 추가되어 현재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누적효과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이 오히려 더 커져 경제적 비효율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OECD 또는 EU는 면세범위 기준 선정시 공익성 및 비영리성을 좁게 적용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이는 특정집단의 요구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면세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당초 면세대상 거래였지만 면세 목적에 어긋나는 거래가 제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11>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와의 비교

구분	면세대상 범위
OECD 표준면세범위 (standard exemption)	우편용역, 의료용역(환자이송용역, 혈액·장기·조직 공급포함),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단체 비상업적인 활동, 스포츠 용역, 라디오 및 TV 방송을 제외한 문화산업,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용역, 복권 및 도박, 토지와 건물 공급, 특정 자금모집 용역
한국의 면세대상 부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우편 등, 담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토지, 근로 유사 인적 용역, 예술행사 및 비직업운동경기 등, 도서관 등의 입장, 종교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수입된 도서 및 학술연구단체 등의 교육용 재화 등

자료: OECD(2006)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 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표 II-12>와 같다. 신고인원 기준으로 보면 법인은 10%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납세자 가운데 일반납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2001년도에는 간이과세자가 약 49%로서 일반납세자보다 많았는데, 2003년부터 일반납세자의 비중이 간이과세자보다 많아져서 2006년 기준으로 각각 약 52%와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 대 개인 비중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과세표준으로 보면 법인의 비중이 82~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비중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납부세액으로 본다면 그나마 0.3% 내외의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2>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단위: 명, 억원, %)

	신 고 인 원				과 세 표 준				납 부 세 액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일반	간이			일반	간이			일반	간이
2001	321,204 (8.66)	1,573,217 (42.42)	1,814,614 (48.92)	3,709,035 (100.00)	12,433,732 (82.05)	2,454,034 (16.19)	266,125 (1.76)	15,153,891 (100.00)	228,449 (81.77)	50,167 (17.96)	760 (0.27)
2002	345,292 (8.71)	1,774,268 (44.77)	1,843,894 (46.5)	3,963,454 (100.00)	14,159,550 (82.06)	2,824,369 (16.37)	271,102 (1.57)	17,255,021 (100.00)	267,527 (82.80)	54,598 (16.90)	978 (0.30)
2003	359,154 (8.99)	1,861,707 (46.90)	1,773,804 (44.40)	3,994,665 (100.00)	15,565,243 (82.68)	3,008,677 (15.98)	252,766 (1.34)	18,826,686 (100.00)	273,027 (81.87)	59,430 (17.82)	1,038 (0.31)
2004	372,041 (9.03)	1,924,877 (46.70)	1,645,329 (39.92)	3,942,247 (100.00)	17,812,752 (83.70)	3,228,273 (15.17)	239,832 (1.13)	21,280,857 (100.00)	268,631 (78.69)	71,587 (20.97)	1,142 (0.33)
2005	400,398 (9.71)	2,117,551 (51.38)	1,603,663 (38.91)	4,121,612 (100.00)	18,575,818 (84.24)	3,459,367 (15.69)	16,154 (0.07)	22,051,339 (100.00)	292,045 (77.89)	82,031 (21.88)	851 (0.23)
2006	42,0454 (9.88)	2,216,802 (52.03)	1,623,990 (38.11)	4,250,946 (100.00)	20,145,074 (84.04)	3,800,085 (15.85)	26,204 (0.11)	23,971,363 (100.00)	307,492 (76.29)	94,686 (23.49)	829 (0.2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조세체계의 국제비교

가. 세수구조 현황

최근 들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상황에서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자본유치 노력에 따른 조세유인책의 하나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에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다음 <표 II-13>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득세 비중은 1975년 8.5%에서 2006년 15.2%로 6.7%p 증가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1975년에서 2005년까지 7.1%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들은 동 기간에 2.7%p 증가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에는 OECD 국가들의 법인세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1.7% 감소하였다.

또한 총세수 대비 소비세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1.2%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28.5%p 줄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은 동 기간중에 무려 20.9%p나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OECD 국가들은 3.3%p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9.7%에서 13.2%로 3.5%p 증가하

여,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들보다 약 두 배 이상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변천

(단위: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1. 총세수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한국	8.5	11.5	13.4	21.1	19.2	14.6	12.7	13.6	13.3	15.2
OECD 평균	29.8	31.3	29.7	29.7	27.1	26.0	25.0	24.6	24.6	24.8
2. 총세수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										
한국	8.9	11.0	11.4	13.5	12.3	14.1	15.3	14.3	16.0	14.3
OECD 평균	7.6	7.6	8.0	8.0	8.1	10.1	9.3	9.6	10.3	10.7
3. 총세수 대비 소비세 비중										
한국	61.1	62.7	59.5	46.7	43.1	38.3	37.1	36.3	34.3	32.6
OECD 평균	32.7	32.4	33.7	31.9	32.4	31.6	32.1	32.3	32.0	31.5
4. 총세수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한국	0.9	1.1	1.5	5.1	7.0	16.7	19.5	20.7	21.0	21.0
OECD 평균	22.0	22.1	22.2	22.3	24.7	24.5	26.1	25.9	25.6	25.3
5. 총세수 대비 급여 등(payroll and work force) 비중										
한국	0.0	0.5	0.5	0.4	0.3	0.2	0.2	0.2	0.2	0.2
OECD 평균	1.3	1.3	1.1	1.0	0.9	0.9	0.9	0.9	0.9	0.9
6. 총세수 대비 재산세 비중										
한국	9.7	8.0	9.1	12.4	14.8	12.4	11.8	11.3	11.9	13.2
OECD 평균	6.3	5.3	5.2	5.7	5.5	5.5	5.6	5.6	5.6	25.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여기서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총세수 대비 비중은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최근 수년간 약간의 증가세이다.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세수비중 평균치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아직도 25% 수준으로 우리나라(15.2%, 2006년)보다 상당히 높다. 법인세의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8~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 또한 소비세수의 비중은 1980년대 초에 60%를 상회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06년에는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가 1%p로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아직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II-1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총세수입 중 소득세제(Income and profit taxes)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29.6%(2006년 기준)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35.7%보다 6.1% 낮은 편이다. 반면, 총세수 대비 소비세제(Goods and Services taxes)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그 후 차차 하락해 오다가 2005년 34.3% 2006년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멕시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과 같이 OECD 내의 후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총세수 중 소비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32.6%로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인 31.5%보다 1.1% 높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세수입 중 재산세제(Property taxes)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세수입에서 재산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OECD 평균인 5.7%보다 7.5% 높다. 하지만, 총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taxes)이 차지하는 비중은 21.0%로 OECD 국가들의 평균값인 25.3%보다 4.3% 낮다.

<표 II-1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6)

	Income and profits	Social Security	Payroll	Property	Goods and Services	Others
캐나다	48.7	14.8	2.0	10.1	24.3	0.3
멕시코	25.1	14.9	1.3	1.6	56.3	0.8
미국	48.3	23.8	-	11.1	16.8	-
호주	59.1	-	4.6	9.1	27.1	-
일본	35.4	36.6	-	9.1	18.6	0.3
한국	29.6	21.0	0.2	13.2	32.6	3.3
뉴질랜드	62.1	-	-	5.2	32.7	0.0
오스트리아	28.8	34.5	6.4	1.4	27.7	1.0
벨기에	37.7	30.5	-	5.1	25.6	0.1
체코	24.5	43.7	-	1.2	30.2	0.0
덴마크	60.1	2.1	0.4	3.8	33.2	0.0
핀란드	38.1	27.9	-	2.5	31.1	0.1
프랑스	24.2	37.0	2.6	8.0	24.8	3.3
독일	30.4	38.4	-	2.5	28.4	0.0
그리스	23.8	35.4	-	4.4	36.0	-
헝가리	24.6	32.1	1.6	2.2	38.4	0.8
아이슬란드	44.1	7.9	0.1	5.3	42.3	0.3
아일랜드	39.8	13.5	0.7	9.1	36.5	-
이탈리아	33.2	29.8	-	5.1	25.6	6.0
룩셈부르크	34.8	27.7	-	9.3	27.9	0.1
네덜란드	27.3	36.1	-	4.7	30.5	0.5
노르웨이	50.1	19.8	-	2.7	27.3	-
폴란드	20.8	36.3	0.8	3.7	38.1	-
포르투갈	23.8	31.9	-	3.1	40.6	0.4
슬로베키아	19.4	39.9	-	1.5	38.7	-
스페인	31.0	33.3	-	9.0	27.2	0.5
스웨덴	39.5	25.5	5.6	3.0	26.1	0.1
스위스	45.7	23.3	-	8.0	23.0	-
터키	21.6	22.4	-	3.6	48.7	3.8
영국	39.7	18.5	-	12.4	29.0	-
OECD 평균	35.7	25.3	0.9	5.7	31.5	0.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197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세수 대비 25%를 차지한 반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은 오히려

II. 조세체계 추이 및 국제비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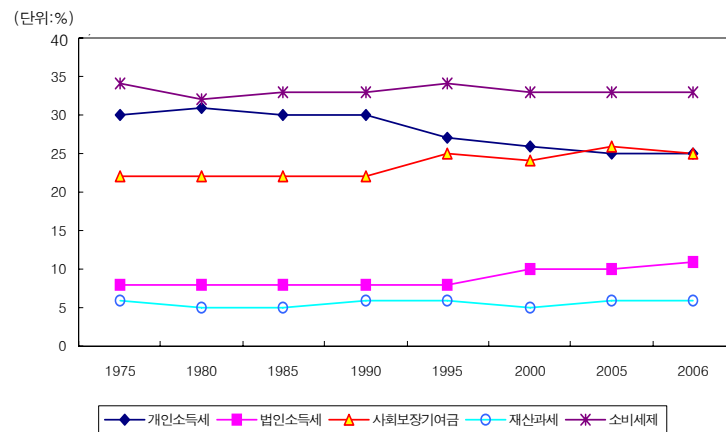
려 감소하였다. 그리고 소득세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오히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및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의 소득세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II-15> OECD 국가의 주요 세목별 세수구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개인소득세	30	31	30	30	27	26	25	25
법인소득세	8	8	8	8	8	10	10	11
사회보장기여금	22	22	22	22	25	24	26	25
고용인	(7)	(7)	(7)	(8)	(8)	(8)	(8)	(9)
피고용인	(14)	(14)	(13)	(13)	(14)	(14)	(15)	(15)
payroll tax	1	1	1	1	1	1	1	1
재산과세	6	5	5	6	6	5	6	6
일반소비세	15	15	16	17	18	18	19	19
특별소비세	18	17	16	13	13	12	11	11
기타	1	0	1	3	3	3	3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그림 II-3] OECD 국가의 세수구조 추이(1975~2006)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한편, OECD 국가들의 전체 평균 세수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15>와 [그림 II-3]에서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입 구조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표 II-16>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합한 소비과세의 비중이 32.6%로 대체로 30% 이하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법인세의 비중도 14.4%로 일본(16.9%)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5.2%로 낮은 편이다. 여기서 소비과세를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해 보면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소득세 비중은 15.2%로 다른 국가들(OECD 평균 24.8%)에 비해 낮은 편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도 21%로 다른 국가들(OECD 평균 25.3%)에 비해 낮다.

<표 II-16> 주요 OECD 국가와의 조세구조 비교(2006)

(단위: %)

	국민 부담률	소득과세			사회 보장	소비과세			재산 과세
		소계	개인 소득	법인 소득		소계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독일	35.6	30.4	24.5	5.9	38.4	28.4	17.8	9.4	2.5
일본	27.9	35.4	18.5	16.9	36.6	18.6	9.2	7.4	9.1
한국	26.8	29.6	15.2	14.4	21.0	32.6	16.8	14.9	13.2
영국	37.1	39.7	28.6	11.1	18.5	29.0	18.1	9.8	12.4
미국	28.0	48.3	36.5	11.8	23.8	16.8	7.8	6.2	11.1
OECD 평균	35.9	35.7	24.8	10.9	25.3	31.5	18.9	10.8	5.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나. 외국의 조세체계 개편 동향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상황에서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넓은 세원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비세 분야에서의 세율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대안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가 소득세나 법인세 부문의 세율 인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⁵⁾.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소득세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조세체계를 소비세를 근간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국의 세목별 기준세율 체계를 중심으로 세제개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득세 세율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주요 선진국인 일본(40%, 2006년까지 37%), 미국(35%), 영국(40%)에 비해 같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최고세율이 낮은 것은 인적자원의 이동 등 노동 공급 및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에 대한 문헌조사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래·김우철(2007) 참조.

<표 II-17> 주요 국가별 소득세 최고세율 및 적용범위(2006)

국가	최고세율(%)	적용소득(A)	평균소득(B)	비율(A/B)
독일	42.00	52,151	42,003	1.24
일본	37.00	18,000,000	5,035,230	3.57
한국	35.00	80,000,000	30,377,732	2.63
영국	40.00	33,300	30,842	1.08
미국	35.00	336,550	32,503	10.35
평균	35.74	-	-	2.24

주: 1. 최고세율은 중앙정부 세율 기준

2. 평균수치는 각 국가별 산술평균

3. 평균소득은 각 국가별 생산직근로자 기준, 자국 화폐로 표시

자료: OECD, Taxing Wages 2005/2006, 2006; 한국조세연구원, 2007

<표 II-18> 법인세 최고세율(2007)

(단위: %)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최고세율	25 (27.5)	28→21 (36.1)	35 (39.3)	30 (40.9)	30 (30)	12.5 (12.5)
	대만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최고세율	25 (25)	30 (30)	30 (33)	28 (28)	22→20 (20)	16→17.5 (17.5)

주: () 안은 지방세 포함한 세율

자료: OECD, Tax Database, 각 연도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1990년대 초에는 35%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세율을 인하하여 25%(지방세 포함 27.5%)가 되었다.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독일은 26.375%이며, 일본과 영국은 30%, 미국·프랑스·이탈리아는 33~35%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아직도 35%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28~30%로 우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아일랜드,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법인세의 세율 인하가 계속되었는데, OECD 회원국 평균 법정세율이 2000~2006년 기간중 31.3%에서 26.2%로 5.1%p 인하하였다. 이렇듯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인하폭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28%→21%), 독일(38.65%→29.83%), 네덜란드(29.6%→24.5%) 등은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이탈리아도 33%인 법인세율을 27.5%로 인하하였다. 실제로 독일은 2006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가 회복되고 재정의 건전성이 나타났다. 반면, 1990년대 말에 독일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제도의 변경 등으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줄지 않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표 II-19>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법인의 GDP 대비 세 부담이 높아진 주요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동시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법인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실효 세 부담이 낮지 않다는 측면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근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은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감소되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높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고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큰 비율로 흡수한다. 다시 말하면, 생

필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면세 또는 차등세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다. 따라서 소비세가 가지는 역진성 때문에 일부 소비품목은 통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미가공식료품과 수돗물 등 생활 필수품목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조세의 역진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표 II-19> 주요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캐나다	2.5	2.9	4.4	3.2	3.6	3.5	3.7
미국	2.4	2.9	2.6	2.0	2.5	3.0	3.3
호주	4.0	4.2	6.3	5.1	5.7	6.0	6.6
일본	6.5	4.3	3.7	3.4	3.7	4.2	4.7
한국	2.5	2.4	3.3	3.9	3.5	4.1	3.8
프랑스	2.2	2.1	3.1	2.5	2.8	2.4	3.0
독일	1.7	1.0	1.8	1.3	1.6	1.7	2.1
영국	3.6	2.8	3.6	2.8	2.8	3.4	4.0
OECD평균	2.6	2.8	3.7	3.3	3.4	3.7	3.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현재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준 약 17.7%로 우리나라의 표준세율 10%에 비하여 크게 높은 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7%, 일본 5%, 스위스 7.6%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표준세율과 그보다 낮은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품목을 따로 두는 복수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20>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단위: %)

	1976	1980	1984	1990	1994	1998	2000	2005	2007
호주	-	-	-	-	-	-	10	10	10
오스트리아	18	18	20	20	20	20	20	20	20
벨기에	18	16	19	19	20.5	21	21	21	21
캐나다	-	-	-	-	7	7	7	7	6
체코	-	-	-	-	22	22	22	19	19
덴마크	15	22	22	22	25	25	25	25	25
핀란드	-	-	-	-	22	22	22	22	22
프랑스	20	17.6	18.6	18.6	18.6	20.6	20.6	19.6	19.6
독일	11	13	14	14	15	16	16	16	19
그리스	-	-	-	18	18	18	18	18	19
헝가리	-	-	-	25	25	25	25	25	20
아이슬란드	-	-	-	22	24.5	24.5	24.5	24.5	24.5
아일랜드	20	25	23	23	21	21	21	21	21
이탈리아	12	15	18	19	19	20	20	20	20
일본	-	-	-	3	3	5	5	5	5
룩셈부르크	10	10	12	12	15	15	15	15	15
멕시코	-	-	-	10	10	15	15	15	15
네덜란드	18	18	19	18.5	17.5	17.5	17.5	19	19
뉴질랜드	-	-	-	12.5	12.5	12.5	12.5	12.5	12.5
노르웨이	20	20	20	20	22	23	23	25	25
폴란드	-	-	-	-	22	22	22	22	22
포르투갈	-	-	-	17	16	17	17	19	21
슬로바키아	-	-	-	-	-	23	23	19	19
스페인	-	-	-	12	16	16	16	16	16
스웨덴	17.7	23.46	23.46	23.46	25	25	25	25	25
스위스	-	-	-	-	6.5	6.5	7.5	7.6	7.6
터키	-	-	-	10	15	15	17	18	18
영국	8	15	15	15	17.5	17.5	17.5	17.5	17.5
한 국	10	10	10	10	10	10	10	10	10
평 균	15.6	16.6	17.4	16.5	17.5	17.9	17.8	17.7	17.7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독일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있었던 6번의 세율 인상에서 모두 1%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였다. 1993년 1월 1일부로 14%에서 15%로 인상(단, 경감세율은 7% 유지)하였는데, 이는 독일 통일의 결과로 구 동독지역의 통합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부로 표준세율을 15%에서 16%로 인상(단, 경감세율은 그대로 7% 수준 유지)하였는데, 임금부대 비용을 줄이고 이로 인한 재정수요를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분으로 충당하는 것이 경기 회복과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복수세율제도를 도입하여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표준세율의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II-21> 독일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의 세율 인상 변천

(단위: %)

	표준세율	경감세율
1968. 6.30 이전	10	5
1968. 7. 1 이후	11	5.5
1978. 1. 1 이후	12	6
1979. 7. 1 이후	13	6.5
1983. 7. 1 이후	14	7
1993. 1. 1 이후	15	7
1998. 4. 1 이후	16	7
2007. 1. 1 이후	19	7

또한 독일은 2006년 법인세율은 인하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독일은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는 인구의 노령화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국제적인 세제경쟁 측면에서 보면 직접세 분야의 세율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이 1990년대 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하였을 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제도 변경, 복지병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는 2003~2004년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1978년에 일반소비세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1988년에 비로소 소비세(3%)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버블경제의 붕괴로 세수 감소 및 국채잔고의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와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대에 따라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하였다.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 5%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자민당 재정개혁연구회는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율을 2010년 이후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5년에 10% 정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등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배려로 식료품 등에 대한 세율은 경감하는 방안도 명시하였다.

또한 영국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007년 기준 현재 17.5% (경감세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1973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표준세율의 변화가 2번 있었는데 변화의 폭은 매우 큰 편이다. 1973년 도입 당시 12%와 8%의 복수의 표준세율을 도입하였고, 1979년에 15%의 단일세율로 인상하였으며, 1991년에 17.5%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부터 서민생활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소득에 역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영국의 영세율 범위가 넓은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부가가치세율이 8% 정도로, 이는 EU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도입 초기에 20%였으나, 그동안 소폭 인하와 인상과정을 거쳐 현재 19.6%로 다소 인하되었다. 프랑스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2%, 5.5%)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감세율 적용 대상을 확장하거나 줄이는 것이 더 정책적인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각계에서는 경감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의약품 등 몇 가지 예외적인 품목에 대한 특별세율(2%)과 해외 영토와 코르시카 지역 등 특별지역에 대하여 배려하는 부가가치세 세율(5.5%)이 있다. 프랑스는 생필품, 식품, 출판물, 장애인용 물품 등에 대하여 경감세율 5.5%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0년에서 1995년까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18.6%의 세율을 20.5%로 인상하였다. 당시의 세율 인상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EU 시장 통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 그러나 당시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오히려 프랑스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정책적으로 실패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0년에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20.6%에서 1% 인하하여 19.6%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정책 시행결과를 분석해 보면, 1%의 세율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표 II-22>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의 세율 인상

(단위: %)

연도	표준세율
1970	23
1974	20
1980	18.6
1995	20.6
2000	19.6

캐나다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민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 부가가치세 세율을 6%로 인하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부가세 대신 소득세를 개편하여야 하고 부가세 세율 인하보다는 영세율 적용품목의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분야의 세율 인상을 보다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 분야에서의 세율 인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누진과세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본에 대해 저율 단일과세함으로써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적 조세경쟁의 심화에 따른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의 전가 및 물가상승 문제, 소득역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은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감소되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하면, 생필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면세 또는 차등세율이 전혀 없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하여도, 물가의 하방경직성, 복잡한 유통과정 등으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해지는 반면,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프랑스는 2000년에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20.6%에서 1% 인하하였으나, 정책 시행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1%의 세율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Ⅲ. 세목간 적정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장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적정 배분 관련 이론적 기반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유도하고자 한다. 현실의 조세제도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대분류에 의거한 제도운용이 일반적이며, 이들 세목간 마치 적정 비율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논의하지만 실제로 이들 세목 간의 적정 비율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박약하고 그리 많이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소득, 소비 간의 적정 비율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론논문의 결과로서 Atkinson and Stiglitz(1976)의 연구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간의 적정 비율의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정 누진도를 달성하는 소득-소비세율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몇 가지 연구들에서는 부문간 납세순응도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고려로 인해 적정 소득 및 소비세율이 유일하게 정의됨을 제시하고 있다(e.g., Boadway et al., 1994) 또한 지하경제(informal sector)의 존재로 인한 탈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조정 및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문제에 대한 고려를 할 경우, 적정 소득 및 소비세율이 유일하게 정의됨을 제시하는 문헌이 최근 발전하고 있다(e.g., Naito, 1999). 능력에 추가적으로 자산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도 적정 소득 및 소비세율의 최적 결합이 유도될 여지가 있다(e.g., Cremer, 2003). 마지막으로 Lee(2008)의 연구는 실업이 존재할 경우 소득 및 소비세제의 역

할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 및 모형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완전경쟁적 이상적 시장 분석에서 나아가 어떠한 방식의 조세제도의 운용이 우리나라 현실의 조세체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및 분석을 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제기한 소득, 소비, 자산과 세 간의 적정 결합은 곧 이상적 완전경쟁시장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의의가 있으므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논의와 함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 결합의 구조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탈세 및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의 조세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셈인바, 기존의 조세체계 적정화의 이론 검토와 나아가 탈세나 실업 등이 존재하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들 모형을 개념적으로 확장하여 접근한다. 부문간 납세순응도의 차이나 실업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의 조세체계 적정화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다.

1. 직접세 · 간접세 간 비중에 대한 논의

가. 논의의 기본 흐름

재정학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나 쉽사리 해결되지 못한 주제로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즉, 흔히 통용되는 일반균형이론에 의거하여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에 관해 논의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직접세에 의해 소득재분배에 의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 경우, 간접세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거나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 사라지고 마는 상황이 일반적임을 많은 연구결과들은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세를 지나치게 누진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한 형태의 누진성을 도입하되, 최고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한계세율은

낮게 유지할 경우 직접세에 의한 역할은 매우 한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1) Atkinson and Stiglitz(1976)의 연구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낸 Atkinson and Stiglitz(1976)의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저자들의 논문에 따르면, 한 사회가 재분배를 통해 사회후생을 높이는 데 합의한 상황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 다음 이러한 효율적인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선형소득세제(non-linear income taxation)가 필요불가결함을 심도 있게 보여준다. 그 다음, 이 상태하에서 과연 소비세제가 추가적으로 사회후생을 제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세제의 도입은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반드시 그러함을 보이고 있다. 즉, 재화간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변수로서 한계대체율 $MRS(x_1, x_2)$ 을 들 수 있는데, 본 MRS의 비율 값은 쉽게 말해 재화 1이 재화 2에 비해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한지를 측정해 주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본 지표가 여가의 수준에 따라 전혀 변동하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특정 재화에 과세함으로써 MRS 비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여가의 수준, 즉 달리 보면 노동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진다는지 하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장점도 없이 재화 시장에 왜곡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하지 않을 경우, 소비세제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 모든 재화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경우 여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때에는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해서 일정률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에만 논의를 국한하게 된다.

2) 비분리(Non-separable) 효용함수의 경우

위에서와 달리,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하지 않을 경우, Corlette and Hague(1953)의 연구는 여가와 보완성이 높은 재화에 과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하게 되어 효율성이 증진됨을 보이고 있다. 즉, 재화 1이 여가와 밀접하게 보완적인 재화라고 한다면, 재화 1에 대한 과세로 인해 $MRS(x_1, x_2)$ 가 재화 1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여가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세제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과세의 효과가 존재한다. 어찌 보면 본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효용함수의 특성상 여가와 상당히 유사한 재화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3) 실증분석 결과

한편,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여가와 재화 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문제는 과연 이처럼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일반적인 효용함수의 경우에서도 소비세제의 구체적 역할이 정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 자발적 선택(self-selection)을 고려한 논의(I)

1) 논의의 기본구조

Stiglitz의 1982년도 연구 이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자발적 선택과정(self-selection mechanism)을 충분히 감안한 재분배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재분배가 단순히 소득을 어느 한 부류의 개인들에서 다른 부류의 개인들로 이전하는 문제 이상의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바로 개인의 특성, 보다 정확히 말해서 보이지 않은 특성으로서의 유형(type)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분배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양호한 유형의 개인에게 많은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능력 유형(high type)의 개인들은 많은 직접세 부담에 직면하게 되어 가급적 노동공급을 줄임으로써 재분배정책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보다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high type 개인들이 저능력 유형(low type) 개인들을 따라하게(mimic)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재분배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명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세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즉, high type 개인들이 low type 개인들을 따라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재분배정책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 경우 소비세제가 재분배정책에 소용되는 많은 비용을 줄여주면서 사회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히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Atkinson and Stiglitz (1976)의 연구가 다시 한 번 분명한 답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전히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소비세제에 의한 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즉, 재화간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변수로서 MRS

(x_1, x_2) 를 들고 있는데, 본 MRS의 비율은 쉽게 말해 재화 1이 재화 2에 비해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한지를 측정해 주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효용함수가 여가와 재화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경우 본 지표가 여가의 수준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특정 재화에 과세함으로써 MRS 비율을 변화시키더라도 여가의 수준 또는 노동공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장점도 없이 재화시장에 왜곡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도 ‘저능력 유형(low type)’의 저소득층들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가 존재하여(즉, 소득수준과 특정 재화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 이러한 재화에 대해 소비세를 낮추어 주고 그렇지 않은 재화에는 소비세를 높일 경우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유형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는 low type 개인들을 따라하려는 ‘고능력 유형(high type)’은 이러한 조세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즉 low type을 따라함)할 경우 자신들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용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근로를 더 늘려서 대응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들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의 가격 하락에 따라 효용이 증가하여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줄어들게 되어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소득재분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고소득층은 소득세 이전을 적게 해주기 때문에 이득인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사항으로서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근로를 하는 방향으로 행위의 변화가 유도”되므로 사회적으로 보아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소비세제의 도입은 소비세제에서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가져오지만, 단일세제(uniform taxation)로부터

비단일세제(non-uniform taxation)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세제의 변화는 $t_c=0$ 인 상황에서는 일계조건의 의미(first-order)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직 이계조건의 의미(second-order)에서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이러한 소비세제의 도입을 통해 노동공급의 증가는 곧 일계(first-order)에서도 양(+)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high type의 잠재적 고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효용의 저하 문제, 즉 달리 보자면 “재분배의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후생 저하 문제”가 완화되는 결과가 유도된다.

2) 시사점

이러한 시각에서 보는 근대적 최적조세이론은 결과적으로 소득세제 자체로만 재분배를 달성할 수 없다는 시각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소비세제의 문제는 탈세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도 최적조세구조를 정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바로 소득세제의 경우 능력 및 소득보고의 충실성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가 존재하지만, 소비에 관해서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하에서는 최적소득세제의 구조를 논의한 후, 그 다음 소비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소득세제의 구조는 최고소득세율은 여전히 0으로 정하고, 대신 그 아래 세율은 양(+)으로 정함으로써 high type의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gh type의 근로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한 탈세의 경향도 high type뿐만 아니라 low type도 균형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비세제

III. 세목간 적정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61

가 부과된다면, 이는 곧 low type 근로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효용 감소를 막기 위해 low type 근로자들의 노동공급 증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때, low type 근로자들을 따라하던 high type 근로자들의 경우, 과거와 같이 따라할 경우, 구매력의 감소로 오히려 효용의 하락을 낳게 되므로 근로를 증가시켜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효율적이고 파레토 효율적인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자산과세에 적용

이러한 논의를 자산과세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재화의 미래의 소비를 각각 독립적 재화로 취급해 보자. 이 때 소비세제란 곧 기간 간 재화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John Stuart Mill을 포함한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왜 근면하고 절약하는 삶의 방식을 장려하지 않고 징벌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Atkinson and Stiglitz의 최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참조해 보면, 재분배에 관한 욕구가 있더라도 노동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재분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자본에 대한 과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필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다. 즉, 기간 간 상대가격 구조를 왜곡하면서 달성하는 재분배 이득은 일반적인 효용함수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소득능력에 있어서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자산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소득과세만으로 형평하고도 효율적인 조세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다. 자발적 선택과정에서의 논의(II): 최근의 논의

또 하나의 관련된 논의로서, Naito(1999)의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한결같이 적용하고 있는 고정한계비용(constant marginal cost of production) 가정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한 효용함수하에서도 새로운 결과를 유도해 내고 있다. 즉, 두 가지 재화가 존재하고 한 재화는 저숙련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다른 재화는 고숙련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재화라 하자. 여기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통해 저숙련근로자를 보다 많이 고용하였다고 하자. 이때 노동시장에서는 저숙련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숙련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기존에 저숙련근로자를 따라 하던 고숙련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계속 저숙련근로자를 따라 하는 경우 후생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차라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후생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러한 행위의 변화는 곧 사회적으로 부족한 생산요소인 노동공급을 제고하게 되어 효율적이게 되고, 동시에 재분배 재원을 보다 쉽게 확보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파레토 개선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본 논의를 소비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즉, 고숙련근로자를 주로 고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소비세를 보다 높게 과세할 경우, 하버거 모형의 논의를 따라 분석해 보면 저숙련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재화의 생산이 고숙련근로자를 위주로 하는 재화에 비해 증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저숙련근로자의 노동수요가 증가하므로 저숙련노동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위에서 논의한 대로 고숙련근로자의 노동공급을 보다 상승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보다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는 것이 초점이 된다.

이처럼 기본적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추가적으로 효용함수 또

III. 세목간 적정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63

는 생산함수에서의 현실성 및 일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적정 소득 및 소비세율이 유일하게 정의됨을 제시하는 문헌이 최근 발전하고 있다(e.g., Naito, 1999).

아래에서는 관련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효용함수가 재화소비와 여가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하기 때문에 여가를 제외하고 개인 i 가 소비재 1과 2에 대한 소비를 주어진 예산 x 를 이용하여 정하는 부분 문제(subquality maximization problem)를 먼저 풀어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에 소비재 2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면 이는 곧 소비세제에서의 단일성(uniformity)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식 (3.1)로 표현이 된다.

$$v(p+t, x) \equiv \max_{\{c_1', c_2'\}} U(c_1^i, c_2^i) \quad (3.1)$$

$$\text{subject to } c_1^i + (p+t)c_2^i \leq x$$

재화 1의 생산과 재화 2의 생산은 각각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을 서로 다른 비율로 고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y_1 = F^1(l_1^s, l_1^u), y_2 = F^2(l_2^s, l_2^u) \quad (3.2)$$

단, 1차동차 생산함수이므로 생산요소의 가격과 재화가격 간에 비용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관련을 맺게 된다.

$$C_1(w_s, w_u) = 1, C_2(w_s, w_u) = p \quad (3.3)$$

재화 1과 2에 대해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의 수요는 산출량과

비용함수의 가격에 대한 편미분 값의 곱으로 표현된다.

$$l_s^k = y_k \frac{\partial C_k(w_s, w_u)}{\partial w_s}, \quad l_u^k = y_k \frac{\partial C_k(w_s, w_u)}{\partial w_u} (k=1,2) \quad (3.4)$$

개인의 효용함수는 재화에 대한 간접효용함수 부분 v 와 여가수요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진 일종의 간접효용 V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숙련노동의 경우 비숙련노동처럼 행동함으로써 재분배문제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V^s\left(v(p+t, x^s), \frac{R^s}{w_s}\right) \geq V^s\left(v(p+t, x^u), \frac{R^u}{w_s}\right) \quad (3.5)$$

마찬가지로, 비숙련노동의 경우 숙련노동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V^u\left(v(p+t, x^u), \frac{R^u}{w_u}\right) \geq V^u\left(v(p+t, x^s), \frac{R^s}{w_u}\right) \quad (3.6)$$

다음으로, 정부예산제약식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 모두의 합이 지출예산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T_s + T_u + t(D(p+t, x^s) + D(p+t, x^u)) \geq E(Q) \quad (3.7)$$

정부부문의 생산 또한 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의 고용으로부터 가능하다.

$$Q = G(l_q^s, l_q^u) \quad (3.8)$$

주어진 정부부문의 생산량에 대한 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의 정부부문에 의한 고용수요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l_q^s = \frac{\partial C_q(z_s, z_u, Q)}{\partial z_s}, \quad l_q^u = \frac{\partial C_q(z_s, z_u, Q)}{\partial z_u} \quad (3.9)$$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공급은 아래와 같이 모두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

$$L^S = l_q^s + l_1^s + l_2^s, \quad L^u = l_q^u + l_1^u + l_2^u \quad (3.10)$$

각각의 생산된 재화는 숙련 및 비숙련노동에 의해 소비되는데, 통상수요(Marshallian demand)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y_1 = c_1^u + c_1^s, \quad y_2 = c_2^u + c_2^s \equiv D(p+t, x^s) + D(p+t, x^u) \quad (3.11)$$

각각의 재화에 대한 수요의 합은 곧 Y 로 표현이 가능하다.

$$D(p+t, x^s) + D(p+t, x^u) = Y(p; l^s, l^u) \quad (3.12)$$

이는 달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D(p+t, x^s) + D(p+t, x^u) = Y(p; L^s - l_q^s, L^u - l_q^u) \quad (3.13)$$

이러한 모든 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의 사회후생 극대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이를 ‘중심적 프로그램(Main program)’이라 명하기로 한다. 아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숙련근로자의 효용을 다음과 같은 제약하에서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i) 저숙련근로자들의 효용을 최소한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ii) 숙련근로자가 저숙련근로자를 따라하지 않고, 동시에 저숙련근로자가 숙련근로자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iii) 정부예산제약식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적화 모형식(Main Program)

$$\max_{L^s, L^u, x^s, x^u} V^s(v(p(\cdot) + t, x^s, L^s))$$

subject to:

$$V^u(v(p(\cdot) + t, x^u), L^u) \geq \overline{U^u}, \quad (\text{MUC})$$

$$V^s(v(p(\cdot) + t, x^s), L^s) \geq V^s(v(p(\cdot) + t, x^u), \Omega(\cdot) L^u) \quad (\text{ICS})$$

$$V^u(v(p(\cdot) + t, x^u), L^u) \geq V^u(v(p(\cdot) + t, x^u), \frac{L^s}{\Omega(\cdot)}), \quad (\text{ICU})$$

$$\begin{aligned} & w_s(p(\cdot))L^s + w_s(p(\cdot))L^u + tD(p(\cdot) + t, x^s) + \\ & tD(p(\cdot) + t, x^u) \geq x^s + x^u + w_s l_q^s((1 + \zeta)\Omega(\cdot)) + \\ & w_u l_q^u((1 + \zeta)\Omega(\cdot)), \end{aligned} \quad (\text{BC})$$

where

$$p(\cdot) = p(L^s, L^u, x^s, x^u, t, \zeta) \text{ and } \Omega(\cdot) = \Omega(p(\cdot))t$$

and ζ are given.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후생함수는 곧 숙련근로자의 후생을 극

대화하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면, 이는 곧 파레토 개선이 되는 자원배분이기 때문이다.

$$W(t) \equiv V^s(v(p(\cdot) + t, x^s(t)), L^s(t))$$

재화 2에 대한 소비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곧 저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상승하는 파레토 개선이 되는 자원배분이 된다는 것을 아래 식은 입증하고 있다.

$$\begin{aligned} \frac{dW}{dt}\bigg|_{t=0} &= \frac{\partial \mathcal{L}}{\partial t}\bigg|_{t=0} \\ &= V_1^{ss} v_p(p, x^s) + \gamma V_1^{uu} v_p(p, x^u) \\ &\quad + \lambda_1 \{ V_1^{ss} v_p(p, x^s) - V_1^{su} v_p(p, x^u) \} \\ &\quad + \lambda_2 \{ V_1^{uu} v_p(p, x^u) - V_1^{us} v_p(p, x^s) \} \\ &\quad + \lambda_3 \{ D(p, x^s) + D(p, x^u) \} + \frac{\partial p}{\partial t} \Delta, \end{aligned} \quad (3.14)$$

여기서

$$\begin{aligned} \Delta &= V_1^{ss} v_p(p+t, x^s) + \gamma V_1^{uu} v_p(p+t, x^u) \\ &\quad + \lambda_1 \{ V_1^{ss} v_p(p+t, x^s) - V_1^{su} v_p(p+t, x^u) - V_2^{su} \Omega'(p)^* L^u \} \\ &\quad + \lambda_2 \left\{ V_1^{uu} v_p(p+t, x^u) - V_1^{us} v_p(p+t, x^s) - V_2^{us} \frac{L^s \Omega'(p)}{\Omega^2} \right\} \\ &\quad + \lambda_3 \left\{ w_s'(p) L^s + w_u'(p) L^u - w_s'(p) l_q^u - w_u'(p) l_q^s - w_s \frac{\partial l_q^s}{\partial p} - w_u \frac{\partial l_q^u}{\partial p} \right\}. \end{aligned}$$

먼저, Atkinson-Stiglitz의 분석에서처럼, 생산의 한계비용이 고정된 경우, 재화 2에 대한 소비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저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상승하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함을 아래 식은 보여준다.

$$\frac{dW}{dt}\bigg|_{t=0} = 0 \quad (3.15)$$

그러나 Atkinson-Stiglitz의 분석과 달리, 생산의 한계비용이 변화하는 일반적인 경우, 재화 2에 대한 소비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저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면서 숙련근로자들의 후생을 상승하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함을 아래 식은 보여준다. 즉, 재분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곧, 숙련노동이 저숙련노동을 따라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 반대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는 곧 $\lambda_1 > 0$, $\lambda_2 = 0$ 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1) 재분배 고려: $\lambda_1 > 0$, $\lambda_2 = 0$

이때는 곧 비단일(non-uniform) 소비세의 도입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소비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비숙련근로자의 효용을 해치지 않고 숙련근로자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유도된다는 점이다.

$$\frac{dW}{dt}\bigg|_{t=0} = \psi_1 \lambda_1 V_2^{su} \Omega'(p) L^u > 0 \quad (3.16)$$

본 논의를 다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다소 기존의 논의와 다른 결과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통해 저숙련근로자를 보다 많이 고용하였다고 하자. 이때 노동시

III. 세목간 적정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69

장에서는 저숙련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숙련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기존에 저숙련근로자를 따라하던 고숙련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계속 저숙련근로자를 따라 하는 경우 후생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차라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후생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러한 행위의 변화는 곧 사회적으로 부족한 노동공급을 제고하게 되어 효율적이게 되고, 동시에 재분배 재원을 보다 쉽게 확보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파레토 개선의 재분배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기업을 통해 생산부문에서 왜곡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즉, 기존의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결과와 매우 배치되는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본적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추가적으로 효용함수 또는 생산함수에서의 현실성 및 일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적정 소득 및 소비세율의 구조가 특수한 형태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기억할 만한 결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중요한 관건은 효율적 재분배를 위해 소비세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큰 강도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 만약에 본 논의에서 전개한 상황이 거의 예외적으로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답은 소비세제 또는 자산과세는 재분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 마치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세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과 내용에 있어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기타 논의

1) 실업보험제도가 존재하는 노동시장 여건의 고려

지금까지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적정 배분의 모색을 위해 소득, 소비, 자산과세 간의 적정 배분관련 이론의 서베이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일반적인 특징은 시장의 여건을 표준적인 경쟁적 시장에 국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장여건이 경쟁적 상황에서 벗어나 계약(contract)을 통한 관계가 설정되기도 한다. 즉, 이 경우 실업이 비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할지라도, 인력의 고용에서 비효율성이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실업보험제도가 사실상 조세정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세제만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할 경우, 사전-사후적으로 노동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통상적으로 소비세제를 강화하는 경우, 실업보험제도에 의존하던 근로자들의 후생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노동공급의 강도를 제고시키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여 도덕적 해이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재분배가 가능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Lee(2008)에서 정리된 관련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효용함수가 재화소비와 여가 간에 약분리가능(weakly separable)하기 때문에 여가를 제외하고 개인 I 가 소비재 1과 2에 대한 소비를 주어진 예산 x 를 이용하여 정하는 부분 문제(subquality maximization problem)를 먼저 풀어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에 소비재 1과 소비재 2에 대해서 차별화된 세율로 과세가 된다면 이는 곧 소비세제에서의 단일성(uniformity)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즉, 각각의 고용상태 및 실업상태에서 주어진 예산을 이용하여 소비재수요를 결정하는 모형에 해당한다.

2단계 문제(Second-stage problem)

$$\text{State1: } \max_{X_1^{em}, X_2^{em}} Q(X_1^{em}, X_2^{em}) \text{ s.t. } (1+t_1)X_1^{em} + (1+t_2)X_2^{em} = (1-t_w)W, \quad (3.17)$$

Stage2:

$$\max_{X_1^{em}, X_2^{em}} Q(X_1^{un}, X_2^{un}) \text{ s.t. } (1+t_1)X_1^{un} + (1+t_2)X_2^{un} = b \quad (3.18)$$

다음은 소비재수요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노력수준(effort)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를 묘사하는 식에 해당한다.

$$\max_e (1 - \pi(e, d)) V^{em}(q, (1-t_w)w, T-e) + \pi(e, d) V^{un}(q, b, T) \quad (3.19)$$

이로부터 일계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pi_e (V^{em} - V^{un}) + (1 - \pi(e, d)) V_{T-e}^{em} = 0 \quad (3.20)$$

본 수식은 곧 노력수준이 내생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주는 식이 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변수인 실업보험급여 수준 및 소비-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생산함수가 노력수준의 일차함수인 경우 즉, $f = e$, 생산 가능곡선을 기술해 주고 있다. 이는 해고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노력수준만이 실제로 생산에 투입되어 재화 및 공공재의 생산에 기여하게 됨을 보여준다.

$$\begin{aligned} eN(1 - \pi(e, d)) &= N(X_1 + X_2) + G \\ &= N[(1 - \pi(e, d))(X_1^{em} + X_2^{em}) + \pi(e, d)(X_1^{un} + X_2^{un})] + G, \end{aligned} \quad (3.21)$$

이러한 거시적 관계는 미시적으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로부터 유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윤함수는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 w 를 주되, 감독의 강도(monitaring intensity)인 d 에 대한 단위당 비용으로 c 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은 개인의 노력수준의 결정요인을 잘 파악한 후 임금수준 w 와 감독(monitaring)의 수준 d 를 정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꾀하게 된다.

$$\begin{aligned} \max_{w, d} [(1 - \pi(e, d))(e - w) - cd]n_i \\ s.t. \ e = e(t_1, t_2, (1 - t_w)w, b, d), \end{aligned} \quad (3.22)$$

이로부터 두 가지 일계조건을 얻을 수 있으며,

$$\pi_e \bullet e_w(e - w) + (1 - \pi)(e_w - 1) = 0, \text{ and} \quad (3.23)$$

$$-\pi_e \bullet e_d(e - w) - \pi_d(e - w) + (1 - \pi)e_d - c = 0$$

위의 두식을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모니터링 관련 함수를 암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많은 기업이 존재하므로 경쟁적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의 결과 영(0) 이윤이 유도되게 된다.

$$(1 - \pi)(e - w) - cd = 0 \quad (3.24)$$

이와 함께 정부의 조세수입이 곧 재정지출과 일치되게 되는 수준에서 균형이 유도되게 된다.

$$N \left[1 - \pi(e, d) \right] \left\{ t_w w + \sum_{i=1}^2 t_i X_i^{em} \right\} + \pi(e, d) \sum_{i=1}^2 t_i X_i^{un} = \bar{G} + N\pi(e, d)b \quad (3.25)$$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사회후생 극대화 문제는 동일한 개인(representative individual)에 대해 사전적으로 Von Neumann Utility를 극대화하는 것과 동일한데, 단 세 가지 제약인 (i) 정부의 예산제약, (ii) 시장균형 제약, 즉 영(0)이윤 제약, (iii) 인센티브 조건에 대한 제약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begin{aligned} L(t_1, t_2, t_w, w, e, d) &= (1 - \pi(e, d)) V^{em}(q, (1 - t_w)w, T - e) + \pi(e, d) V^{un}(q, b, T) \\ &+ \lambda_1 \left\{ N \left[1 - \pi(e, d) \right] \left(t_w w + \sum_{i=1}^2 t_i X_i^{em} \right) + \pi(e, d) \sum_{i=1}^2 t_i X_i^{un} \right\} - \bar{G} - N\pi(e, d)b \quad (\text{GBC}) \\ &+ \lambda_2 (cd - (1 - \pi)(e - w)) \quad (\text{MEC}) \\ &+ \lambda_3 (c - g_d(t_1, t_2, (1 - t_w)w, b, d)) \quad (\text{IC+PMC}) \end{aligned} \quad (3.27)$$

where $q = [1 + t_1, 1 + t_2]$; $X_i^{em} = X_i^{em}(q, (1 - t_w)w)$; $X_i^{un} = X_i^{un}(q, b)$;

이 문제에서 정부는 소비 및 소득세율을 적절히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에서 기업이 정하게 될 임금 및 감독(monitoring) 강도, 그리고 개인이 정하게 될 노력수준까지 적정수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문제에 대해서 소비세율 및 소득세율

간의 관계를 확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기서 소비세율은 단일(uniform)한 형태를 지니게 됨을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소비세율 및 소득세율 간의 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바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율을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을 통해 제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상태, 구직상태 및 실업상태에 해당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세율을 얻게 되고, 동시에 소비세율은 각 상태별로 단일(uniform)한 형태를 지니게 되므로 사실상 두 가지 상태에 따른 정확한 세율을 파악하게 되고, 정규화 이전의 관계를 이용하면 소득세율 또한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begin{aligned}
 L(t_1', t_2', t_1, t_2, w, e, d) &= (1 - \pi(e, d)) V^{em}(q', w, T - e) + \pi(e, d) V^{un}(q, b, T) \\
 &+ \lambda_1 \left\{ N \left[(1 - \pi(e, d)) \left(t_w w + \sum_{i=1}^2 t_i X_i^{em} \right) + \pi(e, d) \sum_{i=1}^2 t_i X_i^{un} \right] - \bar{G} - N\pi(e, d)b \right\} \quad (\text{GBC}) \\
 &+ \lambda_2 (cd - (1 - \pi)(e - w)) \quad (\text{MEC}) \\
 &+ \lambda_3 (c - g_d(t_1', t_2', t_1, t_2, w, b, d)) \quad (\text{IC+PMC})
 \end{aligned} \tag{3.28}$$

$$\text{where } q' = [1 + t_1', 1 + t_2'], \quad q = [1 + t_1, 1 + t_2],$$

그 다음, 이와 같이 문제를 정의한 후, 몇 가지 현실적 가정을 모형에 추가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감독(monitoring)함수가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소비세제가 역진적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수준과 감독(monitoring)수준이 상호 역으로 관계를 갖는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그 다음, 환류(feedback)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일차적 효과(partial effect)를 압도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가 보다 현실적으로 흥미롭다는 전제하에서(즉, the

usual case로 명함), 과연 어떠한 결론이 유도되는지를 살펴보자면 첫째, 실업보험 수혜액의 상승은 곧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본 모형의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게 된다.

$$\frac{dw}{db} = \underbrace{\pi_e e_b^*}_{(-)(-)} + \underbrace{\pi_d d_b^*}_{(+)(+)} > 0 \quad (3.29)$$

다음으로 소비세제는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begin{aligned} \frac{du}{dt_i} &= \pi_e \frac{de^*(t_1, t_2, t_w; b, c)}{dt_i} + \pi_d \frac{dd^*(t_1, t_2, t_w; b, c)}{dt_i} \\ &= \underbrace{\pi_e e_{t_i}^*}_{(-)(\geq 0)} + \underbrace{\pi_d d_{t_i}^*}_{(+)(\leq 0)} \leq 0 \end{aligned} \quad (3.30)$$

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소비세 수입분은 실업보험급여액 인상 또는 소득세율 감소에 사용되지는 않는 전제하에서 유도된 결과이다.

보다 현실성을 도입하여 추가적으로 소비세 수입이 소득세율을 낮추는 소위 revenue recycling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다 더 강한 결론이 유도되는바, 실업률이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begin{aligned} \frac{du}{dt_i} &= \pi_e \frac{de^*(t_1, t_2, t_w; b, c)}{dt_i} + \pi_d \frac{dd^*(t_1, t_2, t_w; b, c)}{dt_i} \\ &= \underbrace{\pi_e}_{(-)} \left[\underbrace{e_{t_i}^*}_{(+)} + \underbrace{e_{t_w}^*}_{(-)} \underbrace{\frac{\partial t_w}{\partial t_i}}_{(-)} \Big|_{R(\cdot)=0} \right] \end{aligned}$$

$$+ \frac{\pi_d}{(+)} \left[\frac{d_{t_i}^*}{(-)} + \frac{d_{t_w}^*}{(+)} \frac{\frac{\partial t_w}{\partial t_i}}{(-)} \Big|_{R(\cdot)=0} \right] < 0 \quad (3.31)$$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다수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높은 소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논의에 대해 복지국가들이 많은 재정지출을 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 소득세제뿐만 아니라 소비세제가 강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단, 본 문제에 대해 왜 소득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가에 대한 답은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매우 박약하다. 혹자는 정치적으로 소득세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문제 또한 소비세를 강화하는 대신 소득세제를 모든 계층에 대해 동일한 수준 인상하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근간에는 복지국가들에서처럼 비자발적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동시에 복지제도가 조세제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하에서 소비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실업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을 막게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상당히 부합하는 실증분석 결과도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다.

마. 논의의 요약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소비세제에 대한 이해가 점차 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소비세제의 독립적 역할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다가 최근에 올수록 재정학 문헌에서는 보다 많

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재분배관련 정책수단으로서 소득세만에 초점을 두던 과거와 달리, 한계생산비용에서의 변화를 허용하는 일종의 하버거 모형에서는 소비세제의 역할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기존 문헌에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관련된 맥락에서 복지제도에 의해 근로의욕이 과도하게 저하된 경우, 소비세제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보였다. 즉, 이러한 논점은 곧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판단 여하에 따라 소비세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증가하고 소득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분배 문제의 악화를 막고자 복지제도가 팽창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등의 정보 문제가 과거에 비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소비세제의 역할을 강조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판단된다.

2. 탈세와 최적조세체계

본 절에서는 탈세의 여부가 적정 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납세자는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탈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탈세가 존재한다면 탈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명목세율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탈세를 고려한 이후의 실효세율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에 문제가 있다면, 탈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의 비율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탈세를 고려하면 그 비율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탈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절한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모형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재화만이 존재하는 경제를 상정한다. 또한 완전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의 기업이 이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한다⁶⁾. 단순모형에서는 이 기업의 자본량이 K 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기업의 자본량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기업의 노동고용량이 L 일 때 이 기업은 생산함수 $y = F(K, L)$ 에 의해 y 만큼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이자율을 r , 재화의 가격을 p ,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w 로 나타내면, 이윤을 최대화하는 이 기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ax p \cdot F(K, L) - r \cdot K - w \cdot L \quad (3.32)$$

그리고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계조건은 이 문제의 목적함수를 자본량과 노동량에 대하여 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 = p \cdot \frac{\partial F(K, L)}{\partial K} \quad (3.33)$$

$$w = p \cdot \frac{\partial F(K, L)}{\partial L} \quad (3.34)$$

6) 기업의 수가 하나가 아니고 다수라 하더라도 그 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본 연구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산함수가 $F(K, L) = A \cdot K^\alpha \cdot L^{1-\alpha}$ 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A ($A > 0$)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A 가 크면 단위 투입당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α 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인 생산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 < \alpha < 1$ 이다. 생산함수가 위와 같다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위의 일계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 \alpha \cdot p \cdot A \cdot \left(\frac{L}{K}\right)^{1-\alpha} \quad (3.35)$$

$$w = (1 - \alpha) \cdot p \cdot A \cdot \left(\frac{K}{L}\right)^\alpha \quad (3.36)$$

전체 소비자의 집합을 N 이라고 하고 $n = |N|$ 이라고 하자⁷⁾. 소비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임금 w 을 받고 후자의 경우에는 $\beta \in (0, 1)$ 의 확률로 B_1 만큼을 생산하거나 또는 $(1 - \beta)$ 의 확률로 B_2 만큼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β 의 확률로 $p \cdot B_1$ 의 소득을 그리고 $(1 - \beta)$ 의 확률로 $p \cdot B_2$ 의 소득을 얻게 된다. 또한 $B_1 > B_2$ 라고 가정을 하며, 식 (3.37)도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beta \cdot B_1 + (1 - \beta) \cdot B_2) \geq D \equiv (1 - \alpha) \cdot A \cdot \left(\frac{K}{n}\right)^\alpha \quad (3.37)$$

7) n 은 충분히 큰 수라고 가정한다. 주6)에서 이 가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3.37)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영업의 평균 생산성이 매우 낮아 모든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기업에 고용되는 모서리의 해가 발생하게 된다. (3.37)은 이러한 모서리 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이다.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효용은 그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재화가 하나뿐인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효용을 재화 대신에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의 효용을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소득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위험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갖는다고 가정하며 위험에 대한 태도가 $\delta (\in (0,1))$ 인 소비자의 효용은 함수 $u(y) = y^\delta$ 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delta = 1$ 인 소비자는 위험중립적인 소비자이며, δ 가 작아질수록 위험을 보다 기피하는 소비자이다. 그리고 δ 는 $(0,1)$ 의 구간에서 확률밀도함수 F 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⁸⁾.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가 δ 인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 살펴보자. 만약 임금이 w 라면 이 소비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 기대효용은 w^δ 이다. 또한 이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 기대효용은 $\beta \cdot (p \cdot B_1)^\delta + (1 - \beta) \cdot (p \cdot B_2)^\delta$ 이다. 소비자는 임금으로부터의 기대효용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의 기대효용을 비교하여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제 $\bar{\delta}(w)$ 을 임금이 w 로 주어졌을 때 취업을 하나 자체적으로

8) 확률밀도함수 F 는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등의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생산하나 무차별한 소비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자. 그러면 $\delta = \bar{\delta}(w)$ 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beta \cdot (p \cdot B_1)^\delta + (1 - \beta) \cdot (p \cdot B_2)^\delta]^{\frac{1}{\delta}} = w \quad (3.38)$$

식 (3.38)의 좌변은 δ 에 대한 연속인 증가함수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균형에서는 $w \leq D$ 이므로, 식 (3.37)에 의해 $\delta = 1$ 인 경우에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균형에서는 $w > B_2$ 이므로 δ 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임금 w 에서 식 (3.38)을 만족하는 δ 는 유일하게 존재하여 $\bar{\delta}(w)$ 가 잘 정의된다⁹⁾.

조세제도가 없고 임금이 w 로 주어져 있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 δ 가 이 $\bar{\delta}(w)$ 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기업에 고용될지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할지가 결정된다. 만약 $\delta < \bar{\delta}(w)$ 이라면 $\beta \cdot (p \cdot B_1)^\delta + (1 - \beta) \cdot (p \cdot B_2)^\delta < w^\delta$ 이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기업에 취업을 한다. 반대로 $\delta > \bar{\delta}(w)$ 인 경우에 해당 소비자는 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 또한 노동자의 비율과 자영업자의 비율도 $\bar{\delta}(w)$ 에 의해 결정되어, 자영업자의 비율은 $(1 - F(\bar{\delta}(w)))$ 이고, 노동자의 비율은 $F(\bar{\delta}(w))$ 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재화의 가격을 1로 규격화하기로 하자. 즉, $p = 1$ 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노동시장의 청산조건은

9)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자의 수가 무한하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없다.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크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L = F(\bar{\delta}(w)) \cdot n \quad (3.39)$$

이 된다. 앞서 $D \equiv (1 - \alpha) \cdot A \cdot \left(\frac{K}{n}\right)^\alpha$ 로 정의하였으므로 식 (3.36)과 (3.39)로부터 다음의 균형조건을 얻을 수 있다.

$$w = D \cdot (F(\bar{\delta}(w)))^{-\alpha} \quad (3.40)$$

이 식은 임금 w 만의 함수이므로 이 식으로부터 임금이 결정되며, 여기서 결정된 임금수준에서 $\bar{\delta}(w)$ 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업에 취업할지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bar{\delta}$ 을 먼저 정하고 나서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3.40)을 (3.38)에 대입하여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beta \cdot B_1^\delta + (1 - \beta) \cdot B_2^\delta]^{\frac{1}{\delta}} = D \cdot F(\delta)^{-\alpha} \quad (3.41)$$

식 (3.38)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식 (3.41)을 만족하는 $\bar{\delta}$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bar{\delta}$ 보다 작으면 기업에 취업을 하고 반대로 $\bar{\delta}$ 보다 크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 결과로 노동자의 비율과 자영업자의 비율은 각각 $F(\bar{\delta})$ 와 $1 - F(\bar{\delta})$ 이다. 또한 노동량이 결정되면 임금도 $w = D \cdot F(\bar{\delta})^{-\alpha}$ 으로 결정된다.

2) 단순 모형에서의 최적조세체계: 탈세가 없는 경우

여기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의 최적조세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뒤에서 이용하기 위해 경제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소득의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다. 소비자들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주어진 δ 보다 작은지 또는 큰지에 따라서, 작으면 노동자를 그리고 크면 자영업자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소비자의 평균소득을 계산해 보자. 이때 노동자의 비율은 $F(\delta)$ 이 되고 자영업자의 비율은 $(1 - F(\delta))$ 이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β 의 확률로 B_1 의 소득을 그리고 $1 - \beta$ 의 확률로 B_2 의 소득을 올린다. 그리고 임금은 $w = D \cdot F(\delta)^{-\alpha}$ 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평균소득은 $[\beta \cdot B_1 + (1 - \beta) \cdot B_2] \cdot (1 - F(\delta)) + D \cdot F(\delta)^{1-\alpha}$ 이다.

이 평균소득을 극대화하는 δ 를 구해보자. 위의 평균소득을 극대화하는 δ 가 만족해야 하는 일계조건은

$$\beta \cdot B_1 + (1 - \beta) \cdot B_2 = (1 - \alpha) \cdot D \cdot F(\delta)^{-\alpha} \quad (3.42)$$

이다. 이 식의 좌변은 δ 에 대해 상수함수이며 우변은 연속인 감소함수이다. 그리고 $\delta = 1$ 일 때 좌변이 우변보다 크고 δ 가 충분히 작다면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δ 는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 값을 δ^* 라고 하고 이때의 평균소득을 y^* 로 나타내기로 하자. 즉,

$$y^* = [\beta \cdot B_1 + (1 - \beta) \cdot B_2] \cdot (1 - F(\delta^*)) + D \cdot F(\delta^*)^{1-\alpha} \quad (3.43)$$

이다. 그리고 δ^* 에서 위의 평균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계조건

이 만족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⁰⁾. 실제로 모형에서의 평균소득은 자영업자의 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y^* 가 본 모형에서 생산 가능한 최대의 평균소득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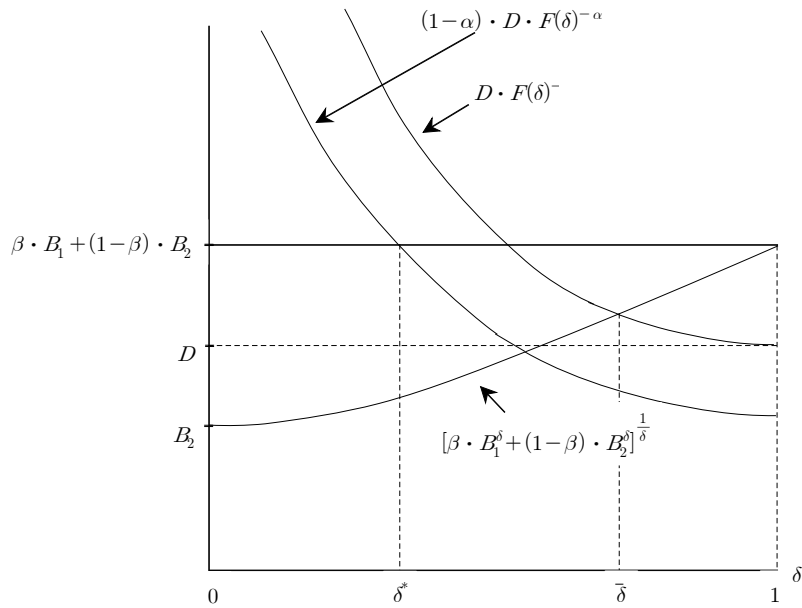
우선 $\bar{\delta}$ 와 δ^* 을 비교하여 보자. 식 (3.41)과 식 (3.42)의 비교를 위하여 뒤 식의 양변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II-1]과 같다. 이 그림을 통해 $\delta^* < \bar{\delta}$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 - F(\delta^*)) > (1 - F(\bar{\delta}))$ 이어서 평균소득을 최대화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영업자의 비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에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임금보다 높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수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자영업자의 수를 조금 늘리면 우선 자영업자의 평균소득과 임金的 격차만큼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수준 역시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평균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것보다 높아야 한다.

이제 조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와 소비세라는 두 세목만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로 거둬들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세율을 달리할 수도 있고 같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y 인 소비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이 $t(y)$ 라면 이 소비자의 전체 소득세액은 $t(y) \cdot y$ 이다.

10) δ^* 에서 식 (3.42)가 성립하므로 이계조건은 $-\delta^* \cdot (1 - \delta^*) \cdot D \cdot F(\delta^*)^{-1-\alpha} \cdot (f(\delta^*))^2 < 0$ 이며 이 식이 성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1) 근로자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n \cdot (1 - F(\delta^*))$ 가 자연수가 아니어서 자영업자의 수는 이보다 작은 최대의 자연수이거나 또는 이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수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여 $n \cdot (1 - F(\delta^*))$ 가 자연수라고 보겠다.

[그림 III-1] $\delta^* < \bar{\delta}$ 의 경우



또한 정부는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소비세로 거둬들일 수도 있는데, 소비세의 경우에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세율이 일정한 경우만을 고려하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소비자의 소비량이 c 이고 소비세율이 t 라면 소비세액은 $t \cdot c$ 이 된다¹²⁾. 그리고 저축이나 자본의 축적을 고려하지 않는 본 절에서 소득이 y 인 소비자는 모든 소득을 소비에 충당하여 소비세액은 $t \cdot y$ 이다¹³⁾.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정부는 거둬들인 세수를 모두 소비자에게 동일한 액수만큼 돌려준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예산제약은 소득세액과 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앞서 재화의 가격을 1로 규격화하였으므로 소비액은 소비량과 동일하다.

13) 소비량에 따라 소비세율이 다른 경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소득세 제도를 설계하고 나서 그 소득세 제도 하나로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소득이 $y = (y_i)_{i \in N}$ 이라고 하자. 소비자의 소득세액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결정된다. 먼저 각 소비자에 대하여 소득이 y^* 을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한다. 즉, 소득이 y 인 소비자의 경우 $T^1(y) = y - y^*$ 이다. 둘째로 $T^2 = -\frac{1}{N} \cdot \sum_{i \in N} T^1(y_i)$ 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소득세액은 이 두 값을 합하여 결정한다. 즉, $T(y) = T^1(y) + T^2$ 이다.

이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소비자의 세전 소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소비자의 세후 소득은 동일하여 총소득이 Y 일 때 각 소비자의 세후 소득은 $\frac{Y}{n}$ 이다. 실제로 소비세 없이 소득세 T 만 시행되면 모든 소비자들의 세후 소득은 y^* 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소득세 T 가 시행된다고 하고 이때의 노동자의 비율을 a 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소비자들의 세후 소득은 $[\beta \cdot B_1 + (1-\beta) \cdot B_2] \cdot (1-a) + D \cdot a^{1-\alpha}$ 이다. 이 세후소득은 $a = F(\delta^*)$ 일 때 최대이고 $a < F(\delta^*)$ 이면 a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a > F(\delta^*)$ 이면 a 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a < F(\delta^*)$ 라면, 현재 자영업자인 소비자가 노동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세후소득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a > F(\delta^*)$ 라면, 현재 노동자인 소비자가 자영업자로 옮겨감으로써 자신의 세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a = F(\delta^*)$ 이며, 소비자들의 세후 소득은 y^* 이다.

또한 T^2 의 정의에 의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총소득세수가 0이 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사회적인 최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사회후생함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후생함수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주어져 있

는 경우 사회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함수 $U: \mathbb{R}^N \rightarrow \mathbb{R}$ 이다. 이 함수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y = (y_i)_{i \in N}$ 일 때 사회의 후생수준이 $U(y)$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사회후생함수 중에서 효율성과 이전 원칙이라는 두 성질을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우선, 효율성은 다른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동일한 채 한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사회후생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Efficiency): 모든 $y, y' \in \mathbb{R}^N$ 와 $i \in N$ 에 대하여, 만약 $y_i > y'_i$ 이고 $y_{N \setminus i} = y'_{N \setminus i}$ 이면 $U(y) > U(y')$ 이다¹⁴⁾.

둘째로 이전 원칙은 다른 모든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소득이 높은 소비자에게서 소득이 낮은 소비자에게로 작은 액수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 모든 $y, y' \in \mathbb{R}^N$, $i, j \in N$, 그리고 $a \in \mathbb{R}_+$ 에 대하여, 만약 $y_i - a = y'_i \geq y'_j = y_j + a$ 이고 $y_{N \setminus i, j} = y'_{N \setminus i, j}$ 이면 $U(y) > U(y')$ 이다.

효율성과 이전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들 사회후생함수의 집합을 Ψ 로 나타내기로 하자¹⁵⁾.

14) $y_{N \setminus i}$ 은 $y_{jj \in N \setminus i}$ 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한다.

15) 물론 완전성(completeness)과 이행성(transitivity)과 같이 일반적인 효용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성질들도 추가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정리 1: 소득세 T 는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한다.

(증명) $U \in \Psi$ 라고 하고, 소득세 T 에서의 세후 소득을 $y = (y_i)_{i \in N}$ 라고 하자. 그러면 앞서 보였듯이 모든 $i \in N$ 에 대하여 $y_i = y^*$ 이다. 이제 어떤 자원 배분을 $x = (x_i)_{i \in N}$ 라고 하자.

먼저 모든 소비자들이 $\sum_{i \in N} x_i$ 의 소득을 갖는 자원배분을 $\bar{x}$ 라고 하자. 그러면 이전 원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U(\bar{x}) > U(x)$ 임을 보일 수 있다. 또한 y^* 가 사회가 생산 가능한 최대의 평균소득이므로 $y^* \geq \sum_{i \in N} x_i$ 이다. 효율성을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U(y) > U(\bar{x})$ 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U(y) > U(x)$ 이다.

경제 내에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 1은 만약 소득세를 적절히 설계하면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분배와 관련하여 정리 1은 위험이 소득의 차이를 가져오는 유일한 원천인 경우에는 적절한 소득세 제도를 통해 이 위험을 사회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3) 탈세가 있는 경제에서의 최적조세제도

하지만 탈세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먼저 소득세제만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자. 이러한 경우에 만약 탈세의 수준이 충분히 높으면 어떠한 소득세로도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여기서 소비세를 도입하여 차선(second-best)의 의미에서 적절한 조세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가령 탈세의 수준이 충분히 높으면 이러한 차선의 경제에서는 최적인 조세구조에서 소비세율이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탈세의 수준이 충분히 높으면 탈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차선의 경제에서 적절한 조세구조에서 소비세율은 커질 수 있다.

3. 소득세와 소비세의 적정 배분 수준에 대한 논의

위에서 전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목간 과세비율이 적절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그리 직접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 적어도 현실적으로 변화의 방향이 어떠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성적 진단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강화가 조세제도와는 사실상 거의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앞서 1절의 연구결과가 잘 부합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1절의 이론적 논의에서와 같이 소비세제의 위상 자체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제는 적어도 더 이상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제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제도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제상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수혜자들의 노동공급의 강도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제도 관련 재정의 조달은 일정 부분 소비세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확대에 따른 세원 투명성의 강화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아직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확대에 따라 탈세가 줄어들었다는 직접적인 보고는 없지만, 그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Atkinson and Stiglitz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소득세제를 통해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를 동시에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비용 중의 하나가 탈세와 관련이 있다. 앞서의 논의는 탈세가 많은 경제에서는 소득세제만을 통해서는 최선(first-best)의 의미나 또는 차선(second-best)의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차선의 의미에서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탈세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소비세제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대로 탈세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소비세제에 덜 의존해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두 논의는 최적 조세체계에 대해 다른 방향의 해답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최근 우리나라는 고유가 및 국제 금융위기 등에 따라 성장 및 고용이 정체되고 있어 국가경제의 전반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성장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새정부의 출범 이후 이러한 조세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세제개편은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원활해지고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나 통일 및 안보관련 재정부담 증가 등 많은 재정수요의 증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그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시장왜곡의 축소와 조세체계 전반의 효율 증진과 안정적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소득세제 개편과 결합한 소비세제로의 이행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세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향후 중장기 세제개혁의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¹⁶⁾.

16)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근본적 조세개혁안들은 궁극적으로 자본공급의 동태적 왜곡 방지와 성장잠재력 유지에 유리한 소비과세를 논의의 중심에 두는 일종의 ‘변형된 부가가치세제’로의 이

이에 따라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은 개방화에 따른 법인세 등 자본과세의 완화, 세목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적용, 그리고 소비과세 비중의 확대라는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을 통하여 조세체계 전반의 효율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미국이나 유럽의 평률세제(flat tax) 논의와 각종 관련 분석(Auerbach 2005 등)에 따르면 조세의 높은 최고세율이나 누진구조에 의존하기보다는 단순히 넓은 과세기반에 의존하는 평률세제의 추구가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세제 강화의 움직임은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영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8%로, 그리고 독일이 현행 38.6%에서 약 30% 정도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로, 더욱 나아가 보다 대폭적인 추가 인하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는 동시에 기업소유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데에 미흡하므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존재한다.

가령 <표 IV-1>에서와 같이 OECD(2008)의 조세와 경제적 효과의 상관관계(tax matrix)에 따르면 법인세의 인상은 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반면,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의

행에 관한 것으로, 대체로 Hall and Rabushka(1995)의 평률세제형 부가가치세제나 Bradford(2005)의 X-tax형 부가가치세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flat tax는 일종의 two-part로 변형된 부가가치세제로 볼 수 있는데, 가계 단계에서 노동관련 소득과세하고 기업 단계에서 비노동 부가가치를 평률과세한다. 일반적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기업 단계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 부가가치세와 flat tax는 총세수 측면에서 동일한 방법일 수 있으며, 단지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김승래, 2006).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93

누진세율 적용은 노동요소 공급과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인소득세의 증세는 일반적으로 형평성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소비세의 증세는 대체로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¹⁷⁾.

한편, 현행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세율 조정이나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보완에는 근본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므로, 오히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원(targeted benefit system) 프로그램 확대’가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OECD나 EU Directive 등에서도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입측면의 ‘사전적인 세율 조정(ex ante mitigation)’보다는 ‘사후적인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ex post compensation) 등의 재정지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OECD 2001, IMF 2001, EU EEA 2005). 특히 세율 조정 등 세입측면의 역진적인 세제개편은 세출측면에서의 ‘소득분배-중립적(distribution-neutral)’인 예산운용 방안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세수의 운용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관련 재정지출의 소득보전효과를 높일 경우, 감세에 따른 기존 조세체계의 효율 개선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져 궁극적으로 분배구조 향상이라는 긍정적 귀착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17) 그러나 전주성(2006)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위 ‘누진소득과세’ 중심의 논의는 대부분의 개도국 실정과는 거리가 멀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세제개혁 이후에는 그 적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낮고, 세율 누진도도 완만하며, 과세베이스가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교과서적 누진과세 논의의 적합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표 IV-1> 주요 세목별 경제적 효과의 정성적 비교(tax matrix)

성장동력 요인	조세 수단									
	소비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단순성
			평균 세율	한계 세율	누진성	최고 세율	배당 소득	자본 이득		
고용	전체	-	-	-	-	-	-	+	+/-	
	여성		-	-	-	-	-	+/-		
	미숙련		-	-	-	-	-	-		
근로시간	전체		+	-	-	-	-	-		
	여성		-	-	-	-	-	-		
자본심화 (K/L)	전체		+/-	-	-	-	-	-		
	FDI		-	-	-	-	-	-		
인적자본	전체		+	-	-	-	-	-		
	전체		-	-	-	-	-	-		
	R&D								+	+/-
TFP	FDI		-	-	-	-	-	-		
	기업		-	-	-	-	-	-		
소득불균형	+	-	-	-	-	-	-	-		

자료: ECO/CPE/WPI(2008), OECD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95

우리나라는 최근 직접세 분야에서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2002년 1%p, 2005년 2%p 인하한 바 있으며, 향후 2012년까지 5%p의 추가적 인하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율의 인하 계획은 향후 기타 세제개편(소비세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 확보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동시에 필요로 할 수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최근의 환경관련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 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세제개편 조치에 있어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와 같은 정책적 차원의 목표에 대한 배려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최근 국제간 조세경쟁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동시에,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로 현행 조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성과를 조세원칙에서 흔히 논의되는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최근 성장동력의 확보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세목별 감세논쟁을 감안하여 향후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1. 효율성 측면

일반적으로 조세체계에 대한 적정화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세목별 세부담 변화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세목별로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

기하면 특정 세목의 세수입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또는 경제주체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는데, 이 추정치를 조세의 한계효율비용(marginal excess burden: MEC)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으므로, 정부는 전체적인 총세부담을 변화시키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세수입의 구성을 한계효율비용이 큰 세목에서 작은 세목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세목별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모형)을 통해 특정 세목의 세부담을 변화시킬 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형의 설정 및 추정과정에서 다양한 가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먼저 Stuart(1984)는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초과비용을 측정하였다. 그의 주요 결과는 1%p의 한계세율 인상시, 세수 단위당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20~24%에 위치(benchmark case)하여 거의 같은 가정하에서 13%를 도출한 Browning(1975)과 대비된다.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는 미국경제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다부문 CGE모형의 계수를 캘리브레이션한 후, 모의실험을 통해 미국 조세체계의 세수 단위당 한계 초과부담이 15~50% 범위에 있음을 측정해 보였다.

기존의 추정결과를 보면 대체로 자본과세의 효율비용이 가장 크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97

고, 그 다음이 노동과세, 소비과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한 연구의 고전에 해당하는 Ballard, Shoven and Whalley(1985)의 경우는 미국의 1973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소득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이 0.23인 데 비해 자본소득세의 한계효율비용은 0.46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노동소득세 수입을 한 단위 증가시킴으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초과부담이 0.23인 데 비해 자본소득세의 경우에는 초과부담이 0.46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iewert and Lawrence(1996)는 1972~199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된 뉴질랜드의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계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로 일반소비과세(자동차 제외)는 0.083으로 노동과세의 0.095 대비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OECD(1999)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소비과세의 한계효율비용은 0.17인 데 비해 개인소득세는 0.56, 법인소득세는 1.5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의 상대적인 크기는 이러한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승래·김우철(2007)은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하였는데, 2004년 기준으로 살펴본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소득과세 0.298, 노동소득과세 0.212, 일반소비과세 0.1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조세체계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자본소득과세나 노동소득과세 등 소득관련 과세에서 소비관련 과세로 세원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소득세 부담을 인하하고 소비과세의 부담을 인상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적 조세경쟁의 심화에 따른 법인

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세제의 근간인 부가가치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2> 주요 세목별 조세의 효율비용(MEC) 추정치

기존 연구	주요 특징	MEC 추정치
Browning(1976)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경제)	0.09~0.16(노동)
Hausman(1981, 1985)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184~0.221(노동)
Stuart(1984)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207(노동)
Hanson and Stuart (1985)	2부문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스웨덴)	0.69~1.29(노동)
Ballard, Shoven and Whalley (1985)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1973, 미국)	0.33(조세시스템 전반) 0.23(노동) 0.46(자본)
OECD(1997)	문헌조사	0.56(개인소득) 0.17(소비) 1.55(법인소득)
Diewert and Lawrence(1996)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자본과세 제외, 1972~1991, 뉴질랜드)	0.083(소비) 0.026(수입) 0.095(노동) -0.025(자동차)
김성태 · 이인실 · 안종범 · 이상돈 (1999)	BFSW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1993, 한국)	0.42(부가세) 1.03(소득세) 1.86(물품세)
Diewert and Lawrence(2002)	부분균형모형(자본과세, 1967~1997, 호주)	0.262(법인) 0.402(재산)
Jorgenson and Yun (2001)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1996, 미국)	0.404(노동) 0.233(조세시스템 전반)
김승래 · 김우철 (2007)	일반균형모형(조세시스템 전반, 자본과세 제외, 1970~2004, 한국) 부분균형모형(자본과세, 1970~2004, 한국)	0.155(소비) 0.096(수입) 0.212(노동) 0.298(자본)

주: 1. 한계효율비용(MEC)은 자국 화폐단위로 평가한 세수 1단위당 한계 초과부담액

2. Diewert and Lawrence(1996)의 경우는 분석기간 내 표본평균(sample average)

3. 김승래 · 김우철(2007)의 경우 2004년 기준 추정치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99

그리고 조세체계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실증근거로, 각종 조세의 부과는 노동자의 근로 및 직업훈련 의욕, 기업의 신규투자나 각종 활동, 그리고 관련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그 효과가 파급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노동 L , 자본 K , 요소생산성 P 를 통한 산출 Y 의 성장회계에 관한 Solow(1956)의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_Y = g_P(T, Z) + \alpha_L g_L(T, Z) + \alpha_K g_K(T, Z) \quad (4.1)$$

여기서 g_i (단, $i = Y, P, L, K$)는 i 의 성장률(growth rate), T 는 조세요인, Z 는 비조세요인(non-tax variables), 그리고 α_L, α_K 는 각각 산출의 노동 및 자본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세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그림 IV-1]에 나타난 Mendoza, Milesi-Feretti, and Asea(1996)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5~1991년 사이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그리고 소비과세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scatter plot)를 각각 분석한 것인데,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대체로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소득과세가 소비과세 대비 경제성장에 더욱 해로움을 보여주고 있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승래·김우철(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한계효율비용의 크기가 자본소득과세 > 노동소득과세 > 소비과세 순으로 추정되므로 아직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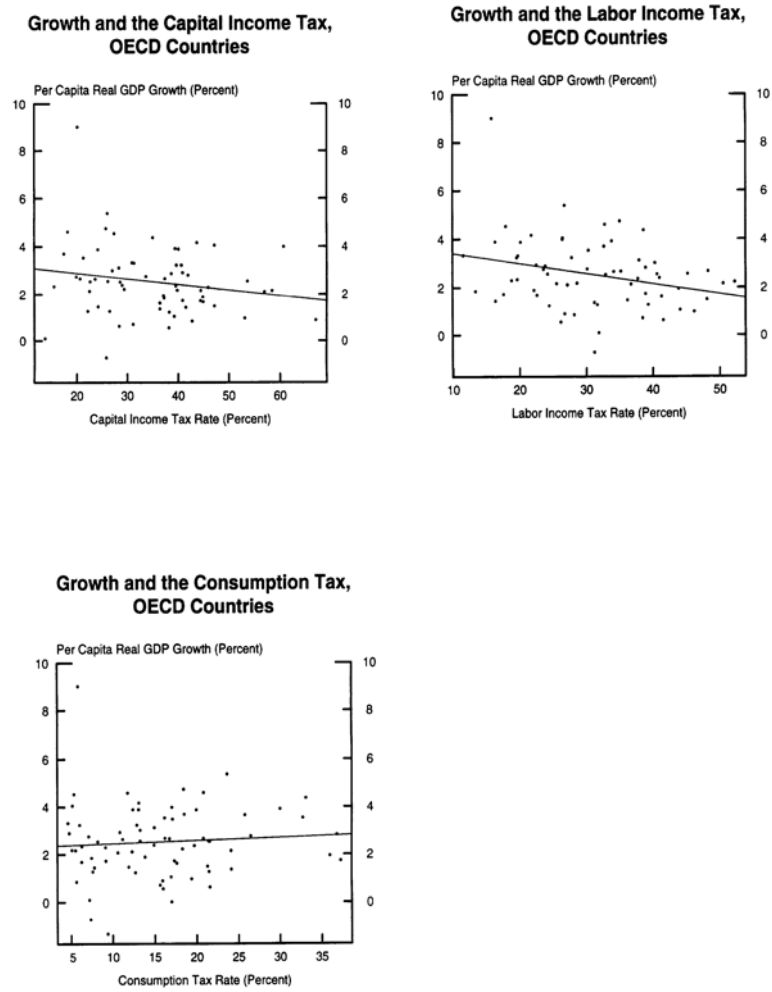
18) OECD 국가들의 경우 앞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소비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의 효율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령 이러한 경우 법인세 등 자본소득과세의 세부담을 인하하고 소비과세의 부담을 인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선진국들이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과세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과세의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높은 편이다. 2005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한국 4.1%, 미국 3.1%, 영국 3.4%, 프랑스 2.8%, 독일 1.7%, OECD 평균 3.7%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준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 19.8%, 미국 15.8%, 영국 14.9%, 일본 26.3%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높은 데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 개선, 법인 수의 빠른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으며, 전반적으로 비교적 넓은 세원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국의 법인세수 대비 감면율을 200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55.1%, 캐나다 28.5%, 미국 23.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2%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많이 낮지 않은 편인 데 비해 세수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비교적 좁은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1] 주요 세목별 세율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자료: Mendoza, Milesi-Ferretti, and Asea(1995)

그리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비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목세율과 비교하여 측정한 C-효율성¹⁹⁾ 지표는 다음 <표 IV-3>에서와 같이 2003년 기준으로 68.9%로, 일본 65.3%, OECD 평균 53%, 유럽 평균 52% 등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대체로 높다.

조세구조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법인세 등 자본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승래·김우철(2007)에서와 같이 소비과세 대비 자본과세의 한계초과부담이 거의 2배에 달하여, 자본과세에서 일반소비과세로 이행하는 경우 효율측면의 국민후생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 세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다른 국가들의 추세를 보면 대체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1977년 도입한 이래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세율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중립적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19) C-효율성(CER)은 $[(\text{부가가치세수}/\text{소비}) \times 100] / [\text{표준세율}] \times 100$ 으로 정의되며 이론상으로는 모든 소비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는 완벽한 세제일 경우에는 CER이 100%가 된다. 그래서 100%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을수록 CER은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산한 결과, 실질적으로 CER은 100%보다 낮게 나오는데, 그 수치가 낮을수록 경감세율이나, 세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잠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2006), *Consumption Tax Trends*, pp. 42~43 참조.

<표 IV-3> C-효율성 비율(2003)

	표준세율	국민소비 ¹⁾	부가가치세수 ¹⁾	CER
호 주	10.0	643,615	34,121	53.0
오스트리아	20.0	169,610	17,944	52.9
벨기에	21.0	210,017	18,938	42.9
캐나다	7.0	906,450	42,181	66.5
체코	22.0	1,919,439	164,250	38.9
덴마크	25.0	1,046,742	135,092	51.6
핀란드	22.0	107,091	12,455	52.9
프랑스	19.6	1,267,458	112,440	45.3
독일	16.0	1,703,090	137,568	50.5
그리스	18.0	128,880	11,951	51.5
헝가리	25.0	14,905,069	1,539,868	41.3
아이슬란드	24.5	671,892	80,940	49.2
아일랜드	21.0	84,241	9,814	55.5
이탈리아	20.0	1,040,063	79,486	38.2
일본	5.0	370,658,900	12,107,000	65.3
한국	10.0	485,380,400	33,447,000	68.9
룩셈부르크	15.0	14,409	1,474	68.2
멕시코	15.0	5,586,952	254,433	30.4
네덜란드	19.0	352,566	34,754	51.9
뉴질랜드	12.5	106,035	12,775	96.4
노르웨이	24.0	1,074,245	135,296	52.5
폴란드	22.0	681,313	60,315	40.2
포르투갈	19.0	108,607	11,072	53.7
슬로바키아	20.0	917,663	81,876	44.6
스페인	16.0	583,760	46,767	50.1
스웨덴	25.0	1,894,364	224,134	47.3
스위스	7.6	314,959	17,156	71.7
터키	18.0	288,590	29,367	56.5
영국	17.5	956,789	77,630	46.4
OECD 전체	17.8	-	-	52.9

주: 1) 해당 국가 화폐단위를 사용하였으며 경상가격임. 단위는 백만
 자료: OECD(2006), p. 53, 김승래 외(2007) 재인용

한편, <표 IV-4>에서와 같이 OECD(2008)는 회원국 21개 국가의 1971~2004년의 주요 거시적 총량지표를 사용하여 조세체계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²⁰⁾.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세부담을 광의의 소득과세에서 소비세 및 재산세로 이전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반면에 소비세 및 재산세 부담을 소득과세로 이전할 때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특히 소비세 및 재산세 부담을 소득과세 중에서도 법인세로 이전하는 경우에 초과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인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이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대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 담당자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고려하면, 각종 비과세·감면을 확대하기보다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럽지역의 국가들에 이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16.5~18%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만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완료하게 되어 있어 이미 상당부분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북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고전적 의미의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본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

2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논의는 안종석·김승래(2008) 참조.

인소득세 세원이 좁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세수입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등 비세제 측면의 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형평성 측면

향후 정부지출 증대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반면 새로운 세원 확보와 세수 증대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세·재정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제적 조세경쟁 및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소비세의 세율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소비세제의 강화는 각종 정책적인 배려나 조세의 재분배기능 약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행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 아래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과세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pro-growth)을 위한 소득관련 과세에서 소비관련 과세로의 점진적 이행에 따른 장애요인에 대한 각종 정책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표 IV-4>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OECD)

추정모형¹⁾:

$$\Delta \ln y_{it} = -\phi_i (\ln y_{it-1} - \theta_1 \ln s_{it}^k - \theta_2 \ln h_{it} + \theta_3 n_{it} + \sum_j \theta_j \ln V_{it}^j - a_{it}) \\ + b_{1i} \Delta \ln s_{it}^k + b_{2i} \Delta \ln h_{it} + b_{3i} \Delta n_{it} + \sum_j b_{ji} \Delta \ln V_{it}^j + \varepsilon_{it}$$

종속변수: Log(1인당 GDP)	(1)	(2)	(3)	(4)
기본모형				
유형자본	0.18 *** (0.05)	0.25 *** (0.05)	0.18 *** (0.05)	0.16 *** (0.05)
인적자본	0.19 *** (0.13)	1.30 *** (0.12)	1.18 *** (0.13)	1.40 *** (0.11)
인구증가	-0.08 *** (0.01)	-0.08 *** (0.01)	-0.07 *** (0.01)	-0.07 *** (0.01)
통제변수(Control Variable)				
총세부담(총세수입/GDP)	-0.27 *** (0.05)	-0.24 *** (0.05)	-0.26 *** (0.05)	-0.22 *** (0.04)
세수입 구조 변수				
소득과세	-0.98 *** (0.20)			
개인소득세		-1.13 *** (0.19)		
법인세		-2.01 *** (0.32)		
소비·재산세			0.93 *** (0.20)	
소비세(재산세 제외)				0.74 *** (0.18)
재산세				1.45 *** (0.43)
표본 수	696	675	696	696
세수증립을 위한 대응조정 세목	소비·재산세	소비·재산세	소득과세	소득과세

주: 1) y : 1인당 국민소득, s^k : 유형자본투자율, h : 인적자본투자율, n : 인구증가율 벡터 V : 정책변수의 집합. 모든 추정모형에 단기동학변수(short-run dynamics), 국가별 상수, 국가별 시간통제변수가 포함.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표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함을 의미(*유의수준 10% ** 5% *** 1%)

자료: OECD(2008), 안종석·김승래(2008) 재인용

가령,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부문의 세율 조정보다는 누진도 자체를 강화하여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소득의 누진과세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부담의 귀착을 안겨주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누진소득과세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별로 저축을 위한 소득인지 소비를 위한 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아 개인의 저축을 위한 소득에 더 많은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동태적 효율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반면,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와 같은 평률의 일반소비세제는 소득과세 대비 소비와 저축 간의 중립적 성격이 강하므로 적어도 중장기적인 형평성의 조정 측면 및 조세체계의 동태적 효율비용 최소화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²¹⁾.

그리고 조세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특정 시점에 치우친 단기적 측면에 치우친 주장과 논거는 그 중장기적 효과에 대한 잘못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정책의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인 효과는 그 정책적 시사점에 있어 다소 다르게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법인세 등 자본관련 소득세제의 완화 정책은 자본스톡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단기적 관점에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비록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궁극적 귀착효과가 상당히 다르

21) 이처럼 동일한 세제개편 정책이 가져오는 장단기 효과가 비교기준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은 정부의 세제개편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단기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증진 가능성도 감안하는 정책입안자의 기본적 시각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²⁾.

우리나라 경우에 <표 IV-1>에서와 같이 자본과세의 효율비용이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석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본과세 인하는 노동과세를 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리함은 김승래(2006)의 동태적 일반균형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본에서 소비로의 세부담 이동이 노동에서 소비로 세부담이 이동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동태적 조정과정에서의 세부담 변화 전가가 노동공급탄력성에 의존하는 효과가 미약하므로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²³⁾. 이는 법인세제와 같은 자본과세로부터 소비과세로 세원을 점차로 이동하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경제 전반의 동태적 효율 향상을 통하여 대다수 경제주체의 생애후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만약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일세대 내의 계층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동시에 세제 개선을 통한 경제 전반적 효율성 향상 및 중장기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조세개혁의 근본방향은 현행 법인세제 등 자본소득과세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소비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경제적 세부담 구조를

22) 가령 법인세율의 인하는 적어도 단기적(일시적)으로는 고소득층·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에 따라 그 효율 증진 효과가 노동 등 기타 요소들에 충분히 전가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경제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김승래, 2006).

23) 생애주기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한 김승래(2006)에 따르면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을 이동하는 데 있어 그 형평성 효과를 평생소득기준의 계층별 Gini계수의 변화를 통해 비교해 보면 자본과세 인하는 경우가 0.01~0.03%로서 노동과세 인하는 경우인 0.01~0.06%보다 더욱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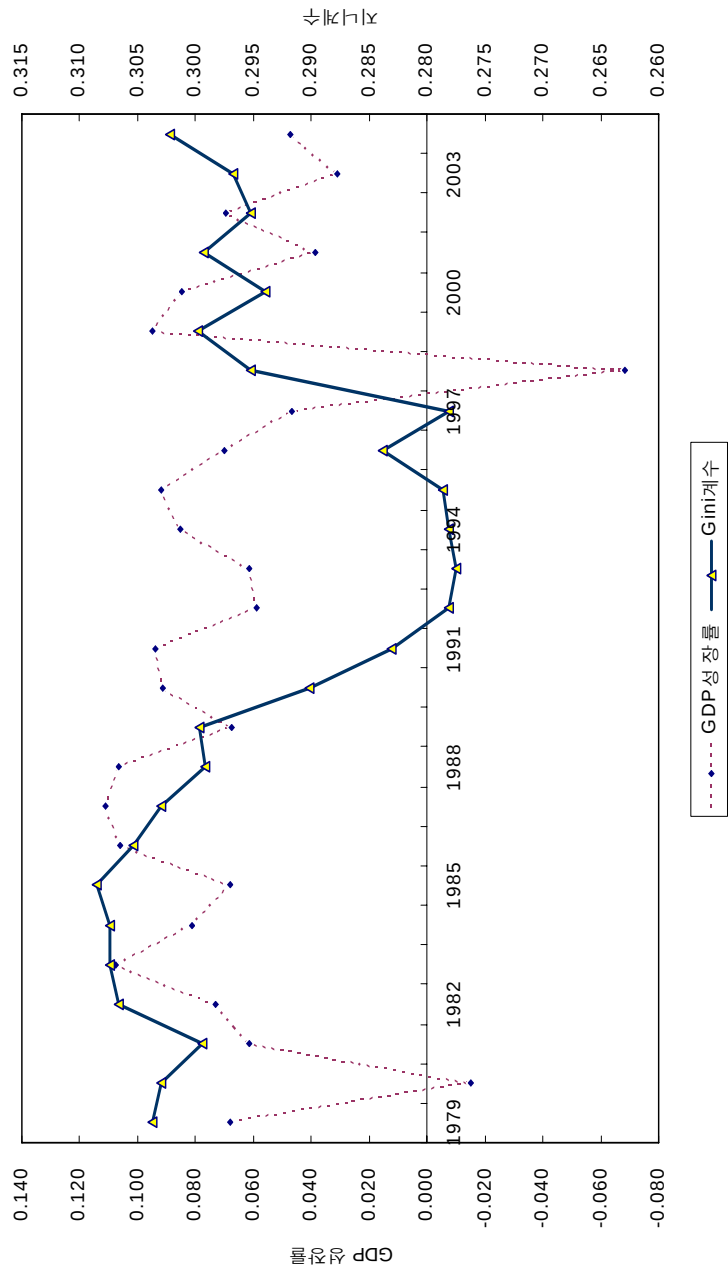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IV-2]와 같다. 이에 따르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하락하여 그나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소득불균형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이후 분배문제 및 재분배를 위한 형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형평성 제고 효과의 증진의 필요성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세부담이 누진적인 소득과세에 대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조정하거나, 인구고령화 추세와 저출산, 실업문제 등으로 인한 재정지원 확보수단으로서 이동성이 낮은 세원 즉,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및 재산세 등의 증가도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세체계 개편의 형평성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세목별 세제개편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가라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Harberger-Shoven-Whalley형 일반균형 귀착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소득 10분위의 소비자그룹별 후생변화 효과를 알아본다²⁴⁾. 특히 우리나라의 세제개편에서 흔히 부각되는 문제인 조세의 재분배기능 변화 정도에 관련하여, 최근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편의 귀착효과를 세부담의 형평성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24) 여기서 이용된 분석모형의 기본 구조 및 자료에 대하여는 부록을 참조.

[그림 IV-2]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



가. 조세귀착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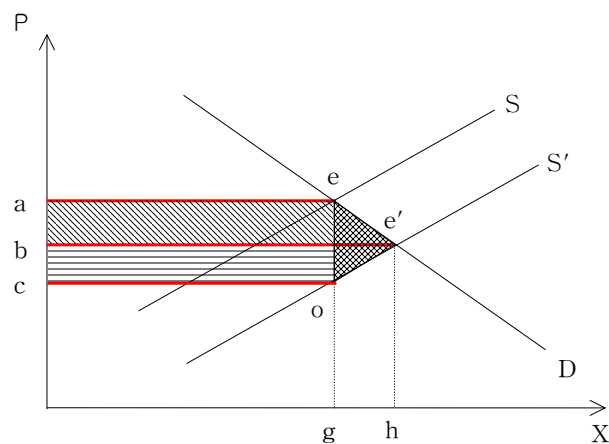
조세의 부담은 흔히 그 명목적인 법정부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에 단순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위의 변화를 통하여 전가된다. 따라서 세부담의 후생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조세의 부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주체별 실질소득(real income)의 직·간접적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주체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조세의 부담을 분담하느냐의 문제는 먼저 가격변화에 반응한 그들의 시장경제 행위 변화, 즉 수요와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반영된 행태탄력성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세부담 변화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반응은 대체로 단기보다는 장기에 보다 탄력적이고, 시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생산기술 구조나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이차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

먼저 소비과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은 소비자 구매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품가격 및 상품을 생산하는 본원적 투입요소에 대한 수익률을 변화시켜 소비자, 근로자, 그리고 자본공급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유류특소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과 같이 상품에 부과된 조세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동시에 이들 상품의 생산을 위한 기업의 요소투입을 위축시켜 근로자의 임금률과 투자자의 저축에 대한 수익률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부분균형분석과는 달리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조세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하고 임금률과 투자수익률 변화에 기인한 노동공급의 변화와 자본 축적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효과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의 세부담 측정은 소비과세의 경우 과세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귀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분포는 단순

히 계층별 소득 대비 특정 상품에 소비된 평균소비지출에 특정 세율을 곱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시장행위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세부담의 분할 및 관련 시장에서의 과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과세상품의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아닌 한 세부담이 소비자 및 생산자가 자원배분을 보다 저렴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담의 측정에 있어 단순히 당해 조세에 의한 세수 변화만을 고려하고 기타 관련 과세의 세수 변화 영향 및 경제주체별 후생손실 비용(deadweight loss)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IV-3] 세목별 증세의 경제적 후생효과



$$\text{세수 증가(aeoc)} + \text{초과부담 증가(eoe')} = \text{소비자잉여 감소(aee'b)} + \text{생산자잉여 감소(be'oc)}$$

이러한 소비과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세나 개인의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그 가격은 임금률이 되며 그 수량은 근로시간, 고용량 등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그 가격은 자본의 수익률이고 그 수량은 기계, 장비, 구조물 및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서비스가 된다.

이 중에서 특히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법인세)의 경우는 이러한 조세를 자본소득원천에 관련된 과세행위로서 자본소득과세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자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물자본의 보유와 관련된 조세인 재산세, 취득·등록세 혹은 부유세 등도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²⁵⁾. 즉 기업의 활동 단계에서 벌어들인 자본소득이 먼저 기업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가 법인세이며 이자, 배당과 자본이득 등과 같은 형태로 가게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가게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소득세이다.

소득 형성에 대한 과세의 귀착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노동관련 과세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급여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업 단계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 관련 과세행위를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자본관련 과세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법인 단계의 법인세로 인한 세전·후의 자본수익률 차이와 개인 단계의 자본소득과세로 인한 세전·후 자본수익률 차이의 총합으로서의 조세췌기(tax wedge)로 측정되며 이러한 법인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그리고 법인 및 개인 단계의 자산보유세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소득관련 과세의 귀착 분석의 이론적 핵심은 조세와 관련된 생산요소 수급의 변화에 있다. 부분균형분석에서와 같이 세계 개편의 귀착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조세에 의한 노동공급이나 저축 행위에 대한 과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나 자

25) 콕태원(2005) 참조.

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따른 세부담은 소득 형성이라는 소득의 ‘원천 측면(sources side)’에 있어 노동이나 자본요소에 귀속되는 부분에 단순히 비례하게 된다. 또한 생산부분에 있어 업종별로 차별화된 생산원가의 변화에 기인하게 되는 상품별 상대가격 변화를 무시한다면 소득의 ‘사용 측면(uses side)’에서 세부담의 이동을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일례로 기업의 자본요소에 대한 세금으로서 법인소득세의 세부담 변화의 경우 그 귀착효과는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은 Harberger(1962)의 일반균형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기타 모든 조세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법인세를 경제 내 법인부분의 자본에 대한 자본요소세(가령 τ_{KX} : X부분의 K요소에 대한 조세)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Harberger의 모형은 당시 국제경제학자들이 사용하던 일반균형모형을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응용한 것으로,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두 개의 부문과 두 개의 생산요소가 있는 경제를 설정하여 그 중 한 부문에 고용된 두 가지 생산요소 중 한 가지에 과세할 경우의 상대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귀착(incidence)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의 법인과 비법인이란 두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탄력성과 생산요소의 공급과 고용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Harberger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그럴듯한(plausible)’ 값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대체로 자본의 소유주에게 귀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Harberger의 이 연구는 법인세 귀착과 관련한 어떤 결론보다도 일반균형 상황에서 법인세나 기타 조세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²⁶⁾. Harberger의 조세귀착 이론은

26) Harberger의 일반균형 귀착모형과 그 확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McLure와 Mieszkowski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지만 이러한 Harberger의 모형은 이론적인 분석을 위한 하나의 틀일 뿐 그 자체가 법인세 귀착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Shoven and Whalley(1972) 등에 의해 CGE 모형을 이용한 조세의 실증적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단순한 이론적인 모형에서는 모형에서 채택한 가정을 어떻게 완화시키는가, 그리고 중요한 구조적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의 실제 귀착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Harberger 모형을 좀 더 현실적인 모형으로 발전시키고 파라미터들의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등 실증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Harberger의 일반균형모형을 하나의 이론적인 분석도구에서 실증적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Shoven and Whalley(1975)에 의한 컴퓨터 모의실험 방법의 도입이다. Harberger의 조세귀착모형은 이론적인 분석에 치우쳐 극단적인 단순화 가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푸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실 경제의 구조를 보다 잘 묘사하는 대형의 다부문(multi-sector) 모형이 만들어지고, 모형 파라미터들을 현실 경제에서의 실증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종전의 I-O 모형처럼 상대가격이 고정된 모형이 아니고 상대가격이 내생화된 계량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법인세 혹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조세가 가져다 주는 상대가격효과, 즉 귀착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법인세는 일차적으로 주주 또는 자본 소유자에게 귀착되지만, 상품 소비자나 노동공급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어 소비자와 노동

Atkinson and Stiglitz(1980) Lecture 6, Atkinson(1994) 등을 참조할 것.

자에게 전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에 대한 왜곡수준이 달라지게 된다²⁷⁾. 부문간 요소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이 전가 가능하며 법인세 부과는 법인의 생산비용 및 상품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어 비법인 부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를 이동시키고 자본비용 상승과 자본 수요 감소를 통한 요소대체효과로 자본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과 자본의 불완전한 대체로 인한 산출량 변화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법인 부문이 생산하는 상품가격의 상승은 상품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한편 이러한 세부담의 궁극적인 귀착은 법인/비법인 부문의 요소집약도,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요소간 대체탄력성, 자본공급의 이자율 탄력성, 자본수익률, 기업의 경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자본의 공급탄력성이 비탄력적인(주로 단기) 경우에는 주주에게 법인세 부담이 귀착되지만 완전 탄력적인(주로 장기) 경우에는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귀착된다. 가령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이전보다 노동자와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자본의 공급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노동의 공급자와 상품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상품수요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요소간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업이 경쟁적일수록 노동자나 소비자에 대한 전가의 효과가 약화된다.

또한 Kryzaniak and Musgrave(1963)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거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Harberger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부담은 기업의 세전 이윤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상품가격을 인상하여 완전히 소비자에게 전방전

27)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어떠한 이론적·실증적 모형도 그 모형의 구조나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각종 문헌에서 아직도 여타 세목과는 달리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가되고 귀착되는가에 대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Sebold(1979)는 비록 단기에서도 미국의 제조업체에서 법인세의 전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CGE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효과분석은 Shoven and Whalley(1984), Kotlikoff and Summers(1987)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의 모형에서도 법인세 부담의 전가 및 귀착이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⁸⁾.

나. 주요 세목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

1) 법인과세의 경우

자본소득과세의 구성요소로서 법인세는 자본소득 원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금이며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에 대한 세금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 아니나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다. 즉 법인세의 변화는 시장에서 상품가격의 변화를 야기하며, 상품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되고, 기업에서의 부담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부담이 분리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건비의 변화와 기업 영업잉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 영업잉여의 변화는 다시 배당되거나 투자 목적으로 유보

28) 한편, 법인세의 단기적 전가와 귀착에 대한 국내의 실증연구는 대체로 미흡한 편이다. 이신일(1998)은 Krzyaniak and Musgrave(1963)의 모형을 근거로 국세통계연보, 기업경영분석 및 한국은행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전가 정도를 부분균형 분석하였다. 그런데 Krzyaniak and Musgrave와 마찬가지로 산업에 따라 상이하나 소비자에게 완전전가 혹은 과잉전가(제조업 35~270%, 건설업 50~303%, 서비스업 22~196%)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성태 외(2003)는 미국 Ballard et al.(1985) 모형을 한국 경제에 적용한 CGE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개편 방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현행 법인세율을 10% 인하하고 세수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후생, 소득분배, 노동 및 저축 등에 기타 시나리오 대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는데, 배당과 유보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영업잉여는 모두 자본의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배당되지 않은 이득은 주가에 반영되어 자본이득 형태의 소득이 된다.

법인세의 인상(인하)은 단순히 세수 증가(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효율비용(excess burden)을 증가(감소)시키게 되는데, 그 형태를 먼저 상품시장에서의 소비자 및 생산자잉여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더 적은 상품을 소비하여 효용이 감소하고, 생산자는 더 적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감소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적인 효율 감소로 세수 증가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타나게 되며, 만약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다른 세목의 세율 인하로 보전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주체의 행위변화의 크기에 따라 궁극적인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및 세부담 귀착의 효과가 결정된다. 또한 상품가격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자본과 노동의 수요가 변동하고 그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²⁹⁾.

먼저 여기서는 법인세 1%p 인상을 통한 경우를 예를 들어 그 세부담 경감의 일반균형적 연간 귀착(annual incidence) 효과를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소득 형성의 원천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기능별로 나누어 모의실험하였다.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강화는 노동 및 자본 소유자에 대한 요소 수익률 저하를 통한 실질소득 감소(소득효과)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를 통한 소비자잉여(가격효과)로 해석 가능하다. 즉 다음 [그림 IV-4]에서와 같이 그 경제적 귀착 파급 효과를 각종 경제부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수의 증가와 경제의 효율감소는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통하여 나타나

29) 가령 법인세 인상의 경우 상품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상품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고용감소가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인 임금을 저하와 영업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고, 이러한 전체적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합은 1.40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0.22조원,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1.18조원으로서 법인세율 인상은 연간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소비자보다는 대부분 생산자에게 부담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수 증가분은 1.25조원으로 하버거 삼각형에 해당하는 조세왜곡의 증가에 따른 효율감소 효과는 약 0.15조원, 약 10.8%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요소에 대한 귀속이라는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귀속은 약 0.12조원, 자본에 대한 귀속은 1.05조원 정도의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의 연간 효과는 기능별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이 자본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법인세 1%p 인상 귀착효과의 구조

(단위: 조원)

	효율감소 0.15 (10.8)	소비부문 0.22 (17.0)	소비부문 0.22 (17.0)	소비부문 0.22 (17.0)
합계 1.40 (100)	세수증가 1.25 (89.2)	생산부문 1.18 (83.0)	노동 0.12 (8.5)	노동 0.12 (8.5)
			자본 1.05 (74.5)	배당 0.21 (15.1)
				유보 0.84 (59.5)

주: ()는 비중으로 나타낸 %, 배당 성향은 20%로 가정, 효율은 계층별 후생변화의 가중평균합

또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이 0.39조원, 그리고 내부유보분이 1.54조원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부담 인하효과의 상당 부분이 재투자 재원으로 내부 유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자본소득과세 변화의 귀착효과를 귀착 유형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법인세라는 기업 단계의 자본소득과세의 세부담의 귀착은 단순히 기업 자체의 수익 자체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법인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단위: 천원, 2007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법인세 부담변화	13	26	29	36	43	48	57	73	100	217
소득대비 비중	0.23%	0.19%	0.15%	0.14%	0.14%	0.14%	0.14%	0.15%	0.17%	0.25%
상대비	0.20	0.40	0.46	0.55	0.67	0.75	0.89	1.14	1.56	3.38

주: '세부담 변화'는 계층별 후생손실을 의미하며, 세부담의 '소득 대비 비중'은 경상소득 기준. 그리고 '상대비'는 전체평균 세부담 대비 분위별 세부담의 비율

그리고 법인과세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별로 그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5>와 같다. 이러한 효과는, 소득그룹별 실질소득의 변화로 측정하여 살펴보면 최하위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연간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약 1만3천원, 그리고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연간소득 상위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21만 7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부담의 귀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간소

득 기준 소득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분위는 1만 3천원, 5분위는 4만 3천원, 7분위는 5만 7천원, 9분위는 10만원 등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최상위계층인 10분위에서 21만원으로 다소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과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누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누진과세는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 거시경제지표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³⁰⁾. 이를 비례과세로 전환할 경우 거시경제지표를 보다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소비 및 보유자산이 전 소득계층에 걸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 및 보유자산 등의 증가가 고소득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 소득 및 자산분포가 넓게 퍼짐으로써 분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소득과세 전환에 따른 소득 및 자산분배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이전지출정책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누진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는 한계가 있다.

<표 IV-6> 소득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단위: 천원, 2007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세 부담변화	1	10	21	36	58	90	115	189	265	514
소득 대비 비중	0.01%	0.07%	0.10%	0.14%	0.20%	0.26%	0.28%	0.40%	0.45%	0.59%
상대비	0.01	0.08	0.16	0.27	0.45	0.69	0.89	1.45	2.04	3.96

주: '세부담 변화'는 계층별 후생손실을 의미하며, 세부담의 '소득 대비 비중'은 경상소득 기준. 그리고 '상대비'는 전체평균 세부담 대비 분위별 세부담의 비율

30) 전영준·현진권(2006) 참조.

소득과세 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별로 그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소득분위별 세부담이 최하위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연간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약 1천원, 그리고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연간소득 상위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51만 4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에 게 부담의 귀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비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나 경감세율 적용의 본연의 취지는 사업자의 세금경감 혜택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가급적 많은 소비자들의 후생증진과 더욱 관련이 있다. 그리고 소비과세로서 부가가치세제의 강화는 대체로 세부담의 귀착효과가 일반적으로 역진적(regressive)이라고 단순히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재분배효과 비교의 기준이 무엇이나(즉, 연간소득 또는 생애소득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더욱이 빈곤 해소와 형평성 제고 등의 소득재분배정책은 어느 단일 세목의 조세지출 효과에 단순히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세제를 포함하는 조세 시스템 전반의 세율구조 조정 및 직접적인 재정지출정책에 보다 밀접하게 의존하게 된다³¹⁾.

일반적으로 누진적 구조로 되어 있는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는 그 세율이 기본적으로 단일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의 유량(flow)에 비례하고, <표 IV-7>과 같이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연간귀착의 관점에서 세부담은 대체로

31) 가령,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일한 액수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유발효과를 비교할 때 후자가 훨씬 클 수 있다.

역진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표 IV-7> 소득 10분위별 평균소비성향(2007)

(단위: %)

분위	평균소비성향 (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성향 (전체 가구)
1분위	126.4	220.7
2분위	96.2	112.7
3분위	88.6	99.7
4분위	83.8	90.4
5분위	81.9	86.2
6분위	78.6	84.2
7분위	75.3	78.7
8분위	69.6	74.1
9분위	66.2	69.2
10분위	57.6	61.0

주: 1.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소득-가계지출)×100

2. 근로자 가구에는 대기업 임원 등 피용자 가구 전체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그러나 연간소득(annual income)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생애소득(lifetime income) 관점에서 보면 소득 대비 소비성향은 대체로 비례적이다³²⁾. 실제로 각종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세제(특히 소비세제상의 조세지출)를 통한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는 그 실질적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³⁾. 더욱이 부가가치세제상 저세율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32) 최근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그다지 유의하지 않으며, 무역관련세 등 기타 소비세제에 비해서는 오히려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의 경우에 비록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금액상 혜택은 해당 품목에 대한 절대소비액이 큰 고소득층에 더욱 많이 귀착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³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서 면세제도가 소득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면 다음 <표 IV-8>과 같다. 여기서는 면세제도의 세부담 혜택의 효과를 연간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별 연간소득액과 동시에 총소비지출액에 대비한 품목별 세부담 귀착을 모두 비교하여 보았다.

이에 따르면 생필품(음식료품 관련) 면세의 경우는 기타 면세품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역진성 완화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만약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소득재분배가 강하게 부각될 경우에는 과세전환으로의 우선순위 고려에 있어 신중해야 할 품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보건·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관련 용역, 문화사회적 권장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의 경우는 연간소득 기준 역진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소비지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세전환 효과가 오히려 누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품목별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

33) Ebrill et al.(2001), pp. 74~77.

34) 가령, 최근 IMF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료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손실된 세수 US1달러당 혜택이 저소득층에 15% 귀속되는 동시에, 고소득층에게도 45%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Value Added Tax: Experiences and Issues, Background Paper, *International Tax Dialogue Conference on the VAT*, 2005, p. 15. 참조. 또한 Porteba(1989)는 미국의 연방물품세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Modigliani and Brumberg(1954)의 소비-smoothing 관점을 도입하여 현재 소비지출이 생애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즉, 현재 소비지출을 생애소득의 대리변수)하고 분석하였는데,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세의 이러한 연간귀착 및 생애귀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etcalf(1994)의 경우도 또한 미국의 주 및 지역 판매세가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누진적임을 보였다.

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의 품목별 조세역진성
완화도

(단위: 천원, 2004년 기준)

면세품목	소득분위										지니계수 변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소비
미가공식료품, 농림수축산물	117	115.1	180.9	204.2	225.2	238.5	249.4	277.6	305.6	379.6	-0.280	-0.101
도서, 신문, 잡지	0.6	1.1	1.4	1.8	2.0	2.1	2.3	2.7	2.9	4.1	-0.001	0.002
정부, 정부대행 기관	11.0	15.5	18.6	21.6	24.2	25.8	27.7	31.6	35.6	50.1	-0.021	0.015
여객운송	35.4	47.0	54.7	65.5	70.2	69.7	81.7	82.8	92.7	128.3	-0.079	-0.014
금융보험	7.9	11.1	13.3	15.6	17.4	18.3	20.1	22.5	25.4	35.8	-0.014	0.010
의료보건, 교육	8.7	12.3	14.8	17.3	19.3	20.4	22.3	25.0	28.2	39.8	-0.016	0.011

주: 소득계층별 불평등지수(지니계수) 변화에 대한 정책시나리오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분석경제의 소득 10분위 소득분포(경상소득)에 의한 지니계수는 0.3022, 총소비지출액 기준에 의한 지니계수는 0.1938

자료: 김승래 외(2007)

만약 부가가치세제상의 면세품목들의 과세 전환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나 기존의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로서 소비과세 강화와 관련된 세제개편은 조세시스템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 전환이라는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한 소비과세의 강화의 경우 연간소득이 아니라 소비지출 측면(또는 생애소득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한 형평성 관련 과

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관한 효과적인 방안은 오히려 개인소득 관련 세제의 누진도 강화나 기타 공제방안 조정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전지출 확대를 통한 직접보조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IV-8>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음식료 관련 생필품이나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용역 등에 대한 면세의 역진성 완화 기여를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 품목들에 대한 면세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세율구조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율(10%)의 일률적인 인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세율 인상 자체가 부가가치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충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자본유치 노력에 따른 조세유인책의 하나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비중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높다³⁵⁾. 다른 국가들은 재정규모의 확대 및 국제적인 조세경쟁 환경 속에서 소비세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꾸준히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부터 10%의 세율을 유지하

35)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나 실효세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차입금 등에 대한 비용처리와 각종 대응경비의 제 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증가분에 대한 과세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세베이스가 협소하여 이를 통한 세수 조달은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소득과 관련된 세제는 각종 기본적인 소득공제 또는 특별공제 및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과세베이스의 침식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용사회와 온라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 시대 도래는 자연적으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는 점차적으로 종합소비세(또는 지출세)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마련이 되어가고 있다.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과세의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소비과세 강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표 IV-9>와 같다. 부가가치세 1%p를 인상할 경우 소득분위별 세부담을 살펴보면, 최하위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연간소득 하위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약 8만원, 그리고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연간소득 상위 10% 계층)의 경우는 연간 37만 1천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표 IV-9> 부가가치세 1%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단위: 천원, 2007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부가가치세 부담 변화	80	102	128	145	163	184	202	221	253	371
소득 대비 비중	1.40%	0.73%	0.64%	0.58%	0.55%	0.52%	0.50%	0.46%	0.43%	0.42%
상대비	0.43	0.55	0.69	0.78	0.88	0.99	1.09	1.19	1.37	2.00

주: '세부담 변화'는 계층별 후생손실을 의미하며, 세부담의 '소득대비 비중'은 경상소득 기준. 그리고 '상대비'는 전체평균 세부담 대비 분위별 세부담의 비율

3. 단순성 측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차신준(1995), 곽태원(1994), 그리고 김형준·박명호(2007)가 있다. 여기에서는 김형준·박명호(2007)를 따라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알아본다. 이에 따르면 법인들이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0>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법인)

(단위: 만원, %)

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평균 법인세액	평균 납세협력 비용	세액 대비 납세협력 비용 비율	평균 부가가치 세액	평균 납세협력 비용	세액 대비 납세협력 비용 비율
액수, 비율	356,465.54	4,083.32	1.15	284,905.96	2,266.04	0.80

자료: 김형준·박명호(2007)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대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0.54%이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72.98%인 반면 김형준·박명호(2007)가 이용한 자료에서는 각각 26.24%와 89.94%였다.

<표 IV-11> 본 연구와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법인의 비교

(단위: %, 개)

구분	김형준·박명호(2007) 자료		국세통계연보	
	기업 수	법인세액	기업 수	법인세액
10억원 미만	7.26	0.26	59.73	1.5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7.88	0.55	28.49	4.87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9.11	3.05	10.73	10.5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9.50	12.20	0.54	5.39
1,000억원 이상	26.26	83.94	0.54	72.98
전체	100	100	100	100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129

이러한 점을 감안하기 위하여 각 계급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그 계급의 평균과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각 계급의 가중치로는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법인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표 IV-12>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법인)

(단위: 만원, %)

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4.41	2.18

김형준·박명호(2007)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납세협력비용을 다음 <표 IV-13>과 같이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이용한 자료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별 사업자의 분포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형별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대신에 5분위별 분포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3>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단위: 만원, %)

구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평균 세액	평균 납세협력 비용	세액 대비 납세협력 비용 비율	평균 세액	평균 납세협력 비용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
액수, 비율	4014.12	306.44	7.64	2561.85	104.07	5.97

그러면 이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먼저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전체 법인세수의 4.41% 정도로 보이며,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7.64%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납부하는 부분의 납세협력비용은 부가가치세수의 2.18%이고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분은 5.97%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도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30.7조 원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9.54조 원이다. 이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3.08%이다.

<표 IV-14>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단위: %)

구분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4.41	7.64	3.08

4. 주요 세목별 비교 종합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2002년 1%p, 2005년 2%p 인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5%p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 마련이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최근의 환경관련세나 부가가치세 인

상으로 인한 추가적 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대체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가가치세 등 일반소비세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대비 조세효율성 및 조세행정 등 효율개선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라는 이론적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을 이동하는 세제개편의 주요한 장애요인은 그 실질적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배적 형평성 관련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³⁶⁾.

이러한 직접세나 간접세의 비중 변화를 유발하는 세제개편 조치에 있어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와 같은 정책적 차원의 목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최근 국제간 조세경쟁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확보나 국가적 재원 조달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와 동시에,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에 대하여 균형 있는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적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그 세제개편의 이행과정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률적인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켜 소득재분배 향상과

36) 이러한 법인세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이나 부가가치세나 환경세 등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세제 강화의 움직임은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영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008년부터 28%로, 그리고 독일이 현행 38.6%에서 2008년부터는 약 30% 정도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더욱 나아가 보다 대폭적인 추가 인하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는 동시에 기업소유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데에 미흡하므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일련의 정책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의 대상을 지금의 일률 적용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및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향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⁷⁾.

한편, 소비세제의 강화가 가지는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역진적인 효과는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면세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하는 등 각종 소득분배 중립적(distribution-neutral)인 예산운용 방안과의 연계가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수의 운용을 기타 저소득층 직접세 부담 경감이나 소득재분배 관련 재정지출의 변화를 통하여 조정할 경우, 기타 세목들과의 상대적 조세효율성이나 소득보전 효과와의 복합적 관계에 따라 그 진정한 경제적 효과의 전가 및 귀착구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³⁸⁾.

37)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 관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기타 세제의 개편과 연계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정책과의 효과적인 결합에 따라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8)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경우는 현행 그 명목세율이 다소 낮은 10% 정도이나 향후 EU나 OECD 국가처럼 기준세율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이나 복수세율 구조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일단 면세대상 품목들의 과세 전환 이후에 시대 조류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사치성 품목에는 할증세율을, 생필품목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소비과세 부담의 역진성을 다소간 보완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소비과세 강화에 따른 경감세율구조가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 보장, 소득분배구조 등 정책적 요인과 함께 소비패턴, 외부성 교정 관련 개별소비세를 전반적 소비과세의 구조 조정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보완·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앞의 1절과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특정 세목의 한계초과부담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종 이론적·실증적 문헌에 따르면, 자본과세 또는 노동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의 세수중립적 이동은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과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영을 위해 세원으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등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선 법인세 인하는 세수의 손실이라는 단순한 재정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경제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 증가, 즉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효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본 연구의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의 10% 인하는 2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뒀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 세수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국민경제잉여는 상품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를 통한 소비자잉여와, 기업의 인건비(노동) 변화 및 자본(영업이익)의 귀속에 따른 생산자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부분별로 나누어 보면 국민경제잉여 2조 6천억원 중 소비자잉여는 4,400억원, 생산자잉여는 2조 1,500억원으로 나타나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일차적으로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즉, 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기업부문의 생산자잉여 증가분을 나누어 살펴보면, 임금인상 등으로 노동부문에 귀속되는 노동귀속분은 2,200억원, 영업이익 증

가로 기업의 자본에 귀속되는 자본귀속분은 1조 9,300억원으로 나타나 요소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생산자잉여의 대부분이 기업의 자본에 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 전반적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률적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 크기가 큰 대기업과 자본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을 지금의 일률 적용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및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또한 향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 관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기타 세제의 개편과 연계하여 세수중립적(revenue-neutral)으로 진행되었을 경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정책과의 효과적인 결합에 따라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대를 위하여 현행 면세품목의 과세 전환이라는 소비세제의 강화가 가지는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역진적인 효과는 법인세 인하의 경우와는 달리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각종 조세체계의 변화가 <표 IV-15>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효율성,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지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과를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조세체계 변화의 효율성 효과는 최종소비자의 후생 변화로 추정된 김승래·김우철(2007)의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MEC) 승수를

<표 IV-15>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의 효율비용 효과 비교

(단위: 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MEC(효율증수) ¹⁾	0.298	0.212	0.155
효율비용 ²⁾	0.298조	0.212조	0.155조
효율비용의 상대적 크기 (부가가치세=1)	1.92	1.37	1

주: 1) MEC(조세의 한계효율비용 또는 한계초과부담)는 세수징수 1단위당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하며, 세목별 평균효율비용과 한계효율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여기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김승래·김우철(2007)의 자본과세, 노동과세, 소비과세의 경우의 근사치로서 원용

2) 조세부과의 자원배분 왜곡의 확대(경제효율성 감소)로 인한 최종소비자의 실질후생감소분(Hicksian 동등변화)을 의미

이용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IV-1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대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률적인 세율 변화에 따른 2007년 연간소득 기준으로 소득 10분위별 세부담의 일반균형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16>과 같다.

이에 따르면 세목별 1조원 세수를 증세할 경우 연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별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1분위는 9천원, 5분위는 3만 1천원, 10분위는 15만 7천원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 1조원을 증세할 경우에는 소득 1분위의 추가부담액은 1천원, 소득 10분위는 41만 1천원이 된다.

<표 IV-16>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비교¹⁾

(단위: 천원, 2007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Gini계수 변화 ²⁾
경상소득	5,702	13,954	19,838	24,954	29,901	35,093	40,655	47,700	87,566
소비지출	11,681	14,955	18,375	20,907	23,564	26,605	28,990	32,043	52,035
법 인 세	추가부담 9	19	21	26	31	35	41	53	72
	소득대비비중 0.17%	0.13%	0.11%	0.10%	0.10%	0.10%	0.10%	0.11%	0.12%
소 득 세	추가부담 1	8	17	28	47	72	92	151	212
	소득대비비중 0.01%	0.06%	0.08%	0.11%	0.16%	0.21%	0.23%	0.32%	0.36%
부 가 세	추가부담 20	26	32	36	41	46	51	55	63
	소득대비비중 0.35%	0.18%	0.16%	0.15%	0.14%	0.13%	0.12%	0.12%	0.11%
Gini계수 변화 ²⁾									
법인세	-0.0264%	(약간 누진적)							
소득세	-0.1999%	(다소 누진적)							
부가세	0.0399%	(약간 역진적)							

주: 1) 법인세는 최고 및 최저세율 1%p 인상으로 1.38조원 증세, 소득세는 과표구간별 세율 1%p 일률 인상으로 1.25조원, 부가
가치세(VAT)는 기준세율 1%p 인상으로 4조원 증세의 경우를 가정

2) Gini계수는 소득불평등도(income inequality)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불평등
도가 심화됨을 의미. 여기서 Gini계수는 2007년 소득(경상소득) 기준으로 세부담 변화전 기준치는 0.3408

그리고 부가가치세 1조원 증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소득 1분위가 2만원, 소득 10분위는 9만 3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 소득 대비 세부담의 변화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각각 0.0264%(약간 누진적), 0.1999%(다소 누진적)가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약간 역진적)가 늘어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반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에 세부담 혜택의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소 제고되는 것으로 그 크기는 현행 법인세의 감세로부터 유발되는 부(-)의 소득형평성 제고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할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의 누진적 세율 조정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소 크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 및 수준은 이상에서 살펴본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및 단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IV-17>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률적인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의 경우에 앞 절에서 분석한 세목별 성과를 종합하여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비교·평가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이다. 이러한 행렬에 따르면 일률적 세율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재분배적 측

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률적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 법인세가 조세의 형평성 및 단순성 측면에서 약간의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중에서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소득세의 경우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하여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7>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율성·형평성·단순성 성과 비교(‘조세-성과 행렬’ 종합)

판단기준 \ 세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효율성	하	중	상
형평성	중	상	하
단순성	중	하	상

주: 주요 세목별로 경제적 성과 비교는 법인세는 최고 및 최저세율의 일률 인상, 소득세는 과표구간별 세율의 일률 인상, 부가가치세(VAT)는 기준세율의 일률 인상으로 증세하는 경우를 가정

그리고 앞의 <표 IV-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소 광범위한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조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약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의 귀착 효과는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소비비중이 많은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를 통해 소비품목별로 면세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부여받고 있어 기준세율의 변화가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일부 상쇄시켜 버린다. 즉, 일률적인 부가가

IV.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경제적 효과 비교 139

치세 기준세율의 인하 효과는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액이 큰 고소득층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귀착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경우 계층간 소득분포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매우 미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약 계층 보호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초생활보조사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세율 조정보다 역진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자본왜곡을 심화시키고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야기하는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20여년간 소비세제의 비중을 제고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 법인세의 세율 인하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OECD 회원국 평균 법정세율이 2000~2006년 기간중 31.3%에서 26.2%로 5.1%p 인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적 조세경쟁의 심화에 따른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환경관련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법인세 인하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마련이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등 복지지출 및 사회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강화가 조세제도와는

사실상 거의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와 같이 소비세제의 위상 자체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제는 적어도 더 이상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제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제도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제상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수혜자들의 노동공급의 강도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제도 관련 재정의 조달은 일정 부분 소비세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데 탈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를 동시에 운용할 필요가 있는 이론적 측면이 있다. 앞서의 논의는 탈세가 많은 경제에서는 소득세제만을 통해서는 최선이나 차선의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차선의 의미에서 사회적인 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제가 강화될 필요가 존재한다.

한편, 효율개선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소비과세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등 소득과세보다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효율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을 이동하는 세제개편에 있어서 분배적 형평성(distributive equity)이 주요한 정책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령,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나 부가가치세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는 세제개편 조치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제고기능과 같은 정책적 차원의 목표(distributional concerns)에 대한 배려가 중요할 수 있다. 즉, 개인소득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이 다소 불분명한 법인세나 소비세의 경우에는 국제간 조세경쟁 추세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확보나 국가적 재원 조달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와 동시에, 관련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에 대하여 균형 있는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먼저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세목의 한계초과부담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종 이론적·실증적 문헌에 따르면, 자본과세 또는 노동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세부담의 세수중립적 이동은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과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동을 위해 세원으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등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및 단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세 인하는 세수의 손실이라는 단순한 재정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효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 본 연구의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의 10% 인하는 2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민경제잉여 뒀은 2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이득은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 세수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 전반적 효율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률적 법인세를 인하는 법인소득 크기가 큰 대기업과 자본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의 대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및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또한 향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관련 자본소득세 인하가 다른 세목 조정과 함께 세수중립적 차원(revenue-neutral)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신규 세수의 환류를 통한 각종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정책과의 조합에 의해 계층별 귀착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종소비자의 후생 변화로 추정된 김승래·김우철(2007)의 주요 세목별 조세효율비용(MEC) 승수를 이용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증세의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대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또한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현행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각각 0.0264%(약간 누진적), 0.1999%(다소 누진적)가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약간 역진적)가 늘어나 소득세 대비 소득 불평등이 다소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에 이로 인한 귀착효과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현행 소득세 대

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법인세에 대한 일률 감세로부터 유발되는 부(-)의 소득형평성 제고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할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초생활보호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조세체계 조정보다 역진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현행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을 통하여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일률적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일률적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 법인세가 조세의 형평성 및 단순성 측면에서의 약간의 부(-)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그리고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중에서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소득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일차적인 정책적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에 조세누진도를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적인 세부담 조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4.
- 곽태원, 『법인소득 과세의 이론과 현실 -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한국조세연구원, 2005. 8
- 김명숙,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 조세부담률의 모색 : 기존 연구 개관 및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4.
- 김성태 · 이인실 · 안종범 · 이상돈, 『KO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개편의 효과분석』, 『경제학연구』, 제51권 제1호, 2003.
- 김승래,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 효과』,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김승래 · 강만옥,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운용 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 주요 세목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형준 · 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나성린 · 이영, 「한국의 적정 조세부담률」, 『공공경제』, 8(1), 2003.
- 안종석 · 김승래, 「효율적 조세체계의 모색」,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이신일, 「한국의 법인소득세 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13집 제1호, 1998.

- 이준구 · 이상영,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논집』, 1996.
- 이진순, 『재정학』, 조세통람사, 1990.
- 정수화,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납세협력비 부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2.
- 차신준,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과 징세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차신준,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제9권 한국조세학회, 1995, pp. 215~257.
-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2007.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2007.
- Altig, D., A.J. Auerbach, L.J. Kotlikoff, K.A. Smetters, and J. Walliser, “Simulating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2001, pp.574~585.
- Atkinson, A. and J. Stiglitz, “The Design of Tax Structure: Direct and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 1976, pp.55~75.
- Atkinson, A.B. and J.E. Stiglitz,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McGraw-Hill, New York, 1980.
- Auerbach, A.J., “The Future of Fundamental Tax Reform,” *AEA Papers and Proceedings* 87(2), 1997, pp.143~146.
- Ballard, C.L., D. Fullerton, J. B. Shoven, and J.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ax Policy Evalu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Barro, R.,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990, pp.103~125.
- Bohringer, C., “Fossil Fuel Subsidies and Environmental

- Constraint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8, 1996, pp. 331~349.
- Bradford, D.F., “A Tax Syste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A.J. Auerbach and K.A. Hassett eds., *Toward Fundamental Tax Reform*, The AEI Press, Washington D.C, 2005, pp. 1~33.
- Branson, J. and C.K. Lovell, “A Growth Maximizing Tax Structure for New Zealand,”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 2001, pp. 129~146.
- Brittain, J.A., “The Incidence of Social Security Payroll Taxes,” *American Economic Review* 61, 1971, pp. 110~125.
- Browning, E.K., “Tax Incidence Analysis for Policy Makers,” In: D.F. Bradford. ed. *Distributional Analysis of Tax Policy*, 1995, pp. 164~180.
- Carroll, R. et al. “A Summary of the Dynamic Analysis of the Tax Reform Options Prepared for the President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Office of Tax Analysis, US Department of Treasury, 2006.
- Casperson, E. and G.E.Metcalf, “Is A Values Added Tax Regressive? Annual versus Lifetime Incidence Measures,” *National Tax Journal* 47, 1994, pp. 731~746.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Tax Cuts: Myths and Realities,” 2006.
- Chamley, C., “The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ation in A Growing 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81,
- Corlett, W. and D. Hague, “Complementarity and the Excess Burden of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1, 1953, pp. 21~30.
- Cremer, H., P. Pestieau, and J. Rochet, “Direct versus Indirect

- Taxation: The Design of the Tax Structure Revisited,”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2, 2001, pp. 781~799.
- Cremer, H., P. Pestieau, and J. Rochet, “Capital Income Taxation When Inherited Wealth Is Not Observabl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7, 2003, pp. 2475~2490.
- Cronin, J.A. U.S. *Treasury Distributional Analysis Methodology* (Office of Tax Analysis. Washington. DC), 1999.
- Diamond, P. and J. Mirrlees,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 Production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1, 1971, pp. 8~27.
- Domenech, R. and J. Garcia, “Optimal Taxation and Public Expenditure in a Model of Endogenous Growth,” Topic in Macroeconomics 2(2),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2002.
- Feldstein, M., “How Big Should Government Be?,” NBER Working Paper 5868, Cambridge, MA, 1996.
- Freebairn, J., “Changing the Tax Mix,”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40(2), 2007, pp. 194~199.
- Fullerton, D. and G.E. Metcalf, “Tax Incidence,” in A.J. Auerbach and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4, 2002, pp. 1788~1872.
- Fullerton, D. and D.L. Rogers,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3.
- Fullerton, D., and D.L. Rogers, “Neglected Effects on the Uses Side: Even a Uniform Tax Would Change Relative Goods Pr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87, 1997, pp. 120~125.
- Gentry, W.M., and R.G. Hubbard,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Introducing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Tax Policy and the Economy* 11, 1997, pp. 1~47.
- Gomez, M,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Temporal Horizon

- on the Optimal Tax Structure,” *Economics Bulletin* 8(1), 2004.
- Gruber, J., “The Incidence of Payroll Taxation: Evidence from Chil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1997, pp. S72~S101.
- Hall, R.E., and A. Rabushka, *The Flat Tax*,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1995.
- Harberger, A.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1962.
- Kay, J and M. Keen, “Measuring The Inefficiency of Tax Syste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5, 1988, pp. 265~287.
- Kotlikoff, L. and L. Summers, “Tax Incidence,” In: A.J. Auerbach and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2, 1987, pp. 1043~1092.
- Krzyzaniak, M. and R.A. Musgrave., *The Shifting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63.
- Lee, C., “Commodity Taxation in Welfare States”, Unpublished working paper, 2008.
- Lian, P. and C.R. Plott, “General Equilibrium, Markets, Macroeconomics, and Money in a Laboratory Experimental Environment,” *Social Science Working Paper* No. 84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993.
- Lyon, A.B, and R.A. Schwab, “Consumption Taxes in a Life-Cycle Framework: Are Sin Taxes Regressiv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1995, pp. 389~406.
- McLure, C.E. Jr.,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Analysis: The Harberger Model After Ten Yea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 1975, pp. 125~161.
- Mendoza, E., A. Razin, and L. Tesar, “Effective Tax Rates in

- Macroeconomic Cross-Country Estimates of Tax Rates on Factor Incomes and Consump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3), 1994, pp. 297~324.
- Mendoza, E., G. Milesi-Ferretti and P. Asea, "On the Ineffectiveness of Tax Policy in Altering Long-Run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6, 1997, pp. 99~126.
- Mirrlees, J., "An Exploration in the Theory of Optimum Income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38, 1971, pp. 175~208.
- Modigliani, F. and R. Brumberg,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1954.
- Musgrave, R.A., "General Equilibrium Aspects of Incidence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43, 1953, pp. 504~517.
- Naito, H., "Re-examination of Uniform Commodity Taxes under a Non-linear Income Tax System and Its Implication for Production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1(2), 1999, pp. 165~188.
- Piggott, J. and J. Whalley, *Economic Effects of U.K. Tax-Subsidy Policies: A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pprais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4.
- Poterba, J.M., "Lifetime Incidence and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Excise Taxes," *American Economic Review* 79, 1989, pp. 325~330.
- Quirnbach, H.C., C.W. Swenson, and C.C. Vines,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General Equilibrium Tax Incid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 1996, pp. 337~358.
- Sandmo, A., Optim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Externalities,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7, 1975, pp. 86~98.

- Scarf, H.E. and J.B. Shoven, eds.,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Sebold, F.D., "The Short-Run Shifting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A Simultaneous Equation Approa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3), 1979, pp. 401~409.
- Shoven, J.B., "The Incidence and Efficiency Effects of Taxes on Income from Capit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976.
- Shoven, J.B. and J. Whalley,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 1984, pp. 1007~1051.
- Shoven, J.B. and J. Whalley, *Applied General Equilibri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Slesnick, D.T., Aggregate Deadweight Loss and Money Metric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2(1), 1991, pp. 123~46.
- Stuart, C., Welfare Costs per Dollar of Additional Tax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74, 1984, pp. 352~62.
- Tait, A.,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IMF, Washington, D.C., 1988.
- Tamaoka, M., "The Regressivity of a Value Added Tax: Tax Credit Method and Subtraction Method - A Japanese Case," *Fiscal Studies*, Vol. 15, No. 2, 1994.
- Tanzi, V. and H. Zee, "Fiscal Policy and Long-Run Growth," *IMF Staff Papers* 44(2), 1997, pp. 179~209.
- Tanzi, V., *Taxation in an Integrating World*,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4.

- Tax Reform Commission, *Tax Matters: Reforming the Tax System*, UK, 2006.
- Turnovsky, S. "Optimal Tax, Debt, and Expenditure Policies in a Growing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0, 1996, pp. 21~44.
- U.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ethodology and Issues in Measuring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June, 1993.

부 록

A.1. 일반균형 조세귀착 분석의 필요성

조세체계의 구조개편은 경제 내의 생산부문에서 업종간의 상대 가격체계와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직접·간접적 파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특히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산업별 생산과정의 중간투입 및 가계의 최종수요에 이르는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파세기반을 가지는 세제의 경우, 그 세율이나 파세기반의 조정은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행위가 이러한 정책적 여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의 경우의 경제적 귀착효과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업종간 생산순환 과정의 연관효과 및 간접효과를 무시한 기존의 단순 부분균형적 접근보다는 일반균형적 접근(*general equilibrium approach*)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조세체계의 개편 관련 유형별 귀착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향후 조세체계의 개편에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개편의 일반균형적 효과 및 성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다산업부문-다소득계층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Shoven-Whalley형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구축하고 업종별,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체계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현실적으로 업종별로 각종 세제혜택이

나 감면이 존재하여 이는 생산의 투입산출 구조를 왜곡(distortions)하고 그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세목별 조세체계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경제의 생산자부문과 소비자부문, 그리고 정부부문으로 나누어 모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경제 내의 업종은 그들의 총매출을 산업간 거래를 포함한 중간구매와 최종구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동시에 이들 업종들은 서로간의 중간투입(intermediate inputs)과 함께 노동 및 자본의 본원적 투입(primary inputs)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며 본원적 투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가 신규로 창출된다.

이러한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조세제도 개편의 귀착효과 분석은 기본적으로 Shoven and Whalley(1984), Piggott and Whalley(1985), Kotlikoff and Summers(1987)가 대표적이며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각종 세부담의 영향 및 전가 정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CGE 분석은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forecasting)을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일관된 틀 내에서 각종 경제적 성과를 서로 비교하고 평가(policy evaluation)하는 유용한 분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A.2. Harberger-Shoven-Whalley형 귀착모형의 기본 구조

본 연구의 세계개편의 귀착효과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Harberger(1961), Shoven and Whalley(1984) 또는 Piggott and Whalley(1985)형의 일반균형모형으로 주요 업종별 경제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인 28개 산업부문과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에 의거하여 연간소득액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10분위로 구분하고, 주요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나누었다³⁹⁾.

분석모형의 기본 구조는 본질적으로 신고전파의 Arrow and Debreu(1954)의 일반균형 이론에 기초한다. 경제 내의 생산자는 기술적 제약하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예산제약하에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균형조건은 상품시장,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완전히 청산되며, 기업은 균형에서 영(zero)의 정상이윤을 가지고, 가계와 정부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가. 생산부문

먼저 경제의 산업별($i = 1, \dots, 28$)로 생산자는 노동 L_i 와 자본 K_i 이라는 본원적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 Y_i 를 생산한다. 이러한 업종별 부가가치는 불변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생산함수로 구성한다.

$$Y_i = \phi_i \left[\delta_i L_i^{\frac{\sigma_i-1}{\sigma_i}} + (1-\delta_i) K_i^{\frac{\sigma_i-1}{\sigma_i}} \right]^{\frac{\sigma_i}{\sigma_i-1}} \quad (\text{A.1})$$

단, $i = 1, \dots, 28$

Y_i : 업종 i 의 부가가치

ϕ_i : 스케일 파라미터

δ_i : 분배 파라미터

K_i, L_i : 자본 및 노동 요소투입량

σ_i : 요소대체탄력성

39) 이러한 산업분류와 소비자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김승래(200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계청의 「가계조사연보」 등, 그리고 귀착 효과 분석을 위한 CGE모형의 구축, 자료이용 및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hoven and Whalley(1992)의 Part II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면, 업종별 본원적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대한 조건부 요소수요함수는 식 (A.1)의 생산함수하에서 비용극소화 조건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L_i = \phi_i^{-1} Y_i \left[\delta_i + (1 - \delta_i) \left\{ \frac{\delta_i P_K}{(1 - \delta_i) P_L} \right\}^{1 - \sigma_i} \right]^{\frac{\sigma_i}{1 - \sigma_i}} \quad (A.2)$$

$$K_i = \phi_i^{-1} Y_i \left[\delta_i \left\{ \frac{(1 - \delta_i) P_L}{\delta_i P_K} \right\}^{1 - \sigma_i} + (1 - \delta_i) \right]^{\frac{\sigma_i}{1 - \sigma_i}} \quad (A.3)$$

단, P_L , P_K : 노동 및 자본의 세후 요소가격

그리고 각각의 업종별 기업의 총산출 X_i 은 위의 부가가치 Y_i 와 기타 j 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물 X_{ij} 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업종별 생산기술 제약과 주어진 산출물가격 P_i 하에 다음과 같이 이윤 Π_i 을 극대화하도록 생산을 결정한다. 여기서 중간투입물들간, 그리고 중간투입과 본원적 투입요소 간에 Leontief 고정계수를 가정한다.

$$\max \Pi_i = P_i X_i - P_L L_i - P_K K_i - \sum_j P_j X_{ij} \quad (A.4)$$

나. 소비부문

한편, 경제의 소비자별($h = 1, \dots, 10$)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은 CES함수로 나타낸다.

$$U_h = \left[\sum_i a_{ih}^{c_{\sigma_c}} \cdot X_{ih}^{c_{\sigma_c} - 1} \right]^{\frac{\sigma_c}{\sigma_c - 1}} \quad (A.5)$$

단, X_i^c : 대표적 소비자 h 가 소비하는 재화(i)의 수량

a_i^c : CES효용함수의 대체탄력성

그러면 소비자 예산제약 $\sum_i P_i X_i^c \leq P_L W_L^c + P_K W_K^c = I^c$ (단, P_i : 최종 소비자가격, W_L^c, W_K^c : 소비자의 노동, 자본 요소부존, I^c : 소비자의 소득)하에 위 식 (A.5)의 소비자그룹별로 효용 극대화를 통해 소비자의 여러 가지 상품별 최종 수요 X_i^c 을 도출할 수 있다.

$$X_{ih}^c = \frac{\sigma_i^c I_h^c}{P_i^{\sigma_i} \left(\sum_i \alpha_i^c P_i^{(1-\sigma_i^c)} \right)} \quad (\text{A.6})$$

이상의 생산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균형조건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 산업별 영의 이윤 조건(zero profit conditions)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의 일반균형으로서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다. 정부부문

본 연구의 정부부문의 역할은 정부예산수지를 통한 모형의 종결(closure)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활동들 중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 관련 정책변화에 의한 경제주체별 세부담의 귀착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세입과 세출을 중심으로 단순화하기로 한다⁴⁰⁾.

$$\sum_j \tau_{Lj} p_L L_j + \sum_j \tau_{Kj} p_K K_j + \sum_j \tau_{Yj} p_j X_{ij} + \sum_i \tau_{Ci} p_i C_i = \sum_i p_{Gi} G_i + \sum_h TR_h \quad (\text{A.7})$$

위 식의 좌변은 각각 노동관련세, 자본관련세, 판매세, 소비세

40)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입부문은 많은 국세와 지방세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본 모형경제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크게 법인세 등 자본관련 과세, 노동관련 과세, 소비과세로 나누어 나타낸다.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각종 세수입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부의 수입은 우변에서와 같이 정부의 부문별 지출이나 민간 이전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라. 모형의 종결 및 균형

조세체계 개편에 대한 일반균형 분석의 목적은 주로 조세의 부과, 전가 및 귀착으로 인한 상품별 자원배분의 변화와 소비자별 후생 변화의 파악에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활동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가계조사연보 등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CGE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형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분석경제의 중간부문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업종별 투입과 산출부문, 그리고 소비자그룹별 다양한 상품별 수요부문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은 최신의 2003년 산업연관표와 2007년 가계조사연보를 이용하여 업종별 생산기술함수 및 소비자그룹별의 소비패턴 구조와 관련된 분석대상 기준경제를 모형 보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세체계의 조정시 소비, 생산, 정부 등의 각 부문의 상호작용과 환류효과라는 정책변화의 직간접 파급효과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분석은 현재 경제가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기준균형(benchmark equilibrium)을 구한 후에, 각종 조세체계의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의 새로운 균형(counterfactual equilibrium)을 계산하고 이러한 두 가지 균형을 서로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 변화나 소득재분배 등 소비자그룹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다⁴¹⁾.

41) 본 모형은 한국의 2007년 경제구조(산업부문은 2003년 I-O)를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하고, 각종 문헌에서 나타난 평균치로서 요소간 대체탄력성의 기준치를 0.8, 상품수요의 대체탄력성 기준치를 0.8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탄력성의 값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Caddy(1976), Piggott and Whalley(1984), Shoven and Whalley(1992) 또는 Fullerton and Rogers(199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부표 1> 업종별 부가가치세 일반균형 I-O실효세율 변화
(기준세율 1%p 인상)

업종	변화 전		변화 후		매출액 비중
	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농림수산물(면세)	0.0000	0.0354	0.0000	0.0354	0.021331
농림수산물(과세)	0.1000	0.1021	0.1100	0.1121	0.001425
광산물	0.1000	0.1027	0.1100	0.1127	0.001949
음식료품(면세)	0.0000	0.0382	0.0000	0.0382	0.013392
음식료품(과세)	0.1000	0.1095	0.1100	0.1195	0.026214
섬유, 가죽제품	0.1000	0.1043	0.1100	0.1143	0.026043
목재, 종이제품	0.1000	0.1034	0.1100	0.1134	0.010744
인쇄, 출판 및 복제(면세)	0.0000	0.0690	0.0000	0.0690	0.004922
인쇄, 출판 및 복제(과세)	0.1000	0.1029	0.1100	0.1129	0.003263
석유, 석탄제품	0.1000	0.1021	0.1100	0.1121	0.030226
화학제품	0.1000	0.1038	0.1100	0.1138	0.062783
비금속광물제품	0.1000	0.1037	0.1100	0.1137	0.013581
제1차금속	0.1000	0.1031	0.1100	0.1131	0.044386
금속제품	0.1000	0.1030	0.1100	0.1130	0.016625
일반기계	0.1000	0.1034	0.1100	0.1134	0.031395
전기, 전자기기	0.1000	0.1035	0.1100	0.1135	0.092468
정밀기기	0.1000	0.1046	0.1100	0.1146	0.004657
수송장비	0.1000	0.1031	0.1100	0.1131	0.061204
기타 및 제조업제품	0.1000	0.1035	0.1100	0.1135	0.007722
전력, 가스 및 수도	0.1000	0.1022	0.1100	0.1122	0.023446
건설(면세)	0.0000	0.0546	0.0000	0.0546	0.018102
건설(과세)	0.1000	0.1028	0.1100	0.1128	0.063718

<부표 1>의 계속

업종	변화 전		변화 후		매출액 비중
	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법정세율 (부분균형)	I-O실효세율 (일반균형)	
도소매	0.1000	0.1036	0.1100	0.1136	0.046275
음식점 및 숙박	0.1000	0.1104	0.1100	0.1204	0.030987
운수 및 보관(면세)	0.0000	0.0613	0.0000	0.0613	0.016877
운수 및 보관(과세)	0.1000	0.1032	0.1100	0.1132	0.019283
통신 및 방송(면세)	0.0000	0.0378	0.0000	0.0378	0.004835
통신 및 방송(과세)	0.1000	0.1023	0.1100	0.1123	0.020191
금융	0.0000	0.0179	0.0000	0.0179	0.034982
보험	0.0000	0.0272	0.0000	0.0272	0.007677
주택소유	0.0000	0.0151	0.0000	0.0151	0.034427
부동산	0.1000	0.1048	0.1100	0.1148	0.070598
공공행정	0.0000	0.0280	0.0000	0.0280	0.033427
교육	0.0000	0.0195	0.0000	0.0195	0.037761
의료보건	0.0000	0.0502	0.0000	0.0502	0.014036
위생·청소소독	0.0000	0.0303	0.0000	0.0303	0.003609
사회 및 기타서비스(면세)	0.0000	0.0486	0.0000	0.0486	0.004369
사회 및 기타서비스(과세)	0.1000	0.1031	0.1100	0.1131	0.020405
기타	0.1000	0.1110	0.1100	0.1210	0.020665

주: 현행 면세부문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03년)의 가장 상세분류인 404부문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면세 존재 명목세율체계의 시뮬레이션 기준경제(benchmark economy) 균형벡터를 재복제할 수 있도록 I-O 실효세율을 계산. 이 경우 중간재간 거래를 포함하는 업종간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고려된 실제 세후균형가격에 대한 가상적 세전균형 가격 베이스를 기반으로 I-O 실효세율이 결정

<부표 2> 소득 10분위별 소득유형 분포

(단위: 천원, 2007년 평균)

소득계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I 소득	6,260	14,708	20,728	25,903	30,984	36,240	41,938	49,460	60,943	99,751	38,693
1. 경상소득	5,702	13,954	19,838	24,954	29,901	35,093	40,655	47,700	58,424	87,566	36,380
1.1 근로소득	1,690	6,912	11,601	14,033	18,288	21,818	28,141	33,876	42,793	65,485	24,465
-가구주소득	1,331	5,370	9,053	10,289	13,120	15,579	19,856	24,576	30,418	45,201	17,480
가구주급여	1,326	5,344	8,950	10,120	12,712	15,035	18,748	22,485	26,463	34,876	15,606
가구주상여	6	27	103	169	408	544	1,108	2,091	3,955	10,325	1,874
-배우자소득	194	744	1,289	1,719	2,435	3,184	4,150	4,655	6,471	11,435	3,628
배우자급여	194	737	1,277	1,694	2,393	3,128	4,057	4,493	6,120	9,747	3,384
배우자상여	0	7	12	25	41	56	94	162	351	1,688	244
-기타가구원소득	165	797	1,260	2,026	2,733	3,055	4,134	4,646	5,903	8,849	3,357
기타가구원급여	165	796	1,254	2,013	2,699	3,010	4,055	4,501	5,632	8,285	3,241
기타가구원상여	0	2	6	12	33	45	79	145	271	564	116
1.2 사업소득	797	3,207	4,749	7,148	7,847	10,001	9,269	10,064	11,375	14,983	7,944
가구주사업소득	761	3,034	4,434	6,691	7,032	9,100	7,922	8,526	8,974	10,508	6,698
배우자사업소득	30	109	230	308	603	697	984	1,161	2,029	3,765	992
기타가구원소득	7	65	85	150	211	204	363	377	372	710	254
1.3 재산소득	373	693	535	662	653	611	548	994	1,022	3,017	911
이자소득	36	112	97	150	112	109	119	140	233	634	174
배당소득	4	0	1	3	6	1	11	7	56	90	18
부동산임대소득	332	575	426	495	526	499	414	845	729	2,257	710
기타재산소득	1	6	11	14	8	3	4	2	4	35	9
1.4 이전소득	2,842	3,142	2,953	3,110	3,115	2,664	2,697	2,767	3,235	4,082	3,060
-공적보조금	1,299	1,371	1,507	1,537	1,466	1,040	1,000	1,001	1,264	1,511	1,300
공적연금	429	556	879	978	969	674	692	741	812	1,070	780
기타사회보장	870	815	628	560	497	366	309	260	452	441	520
-사적이전	1,543	1,770	1,446	1,573	1,648	1,623	1,697	1,765	1,971	2,571	1,761
2. 비경상소득	558	754	890	949	1,082	1,147	1,284	1,759	2,519	12,184	2,313
-경조소득	1	6	1	5	9	11	27	58	127	3,311	356
-기타경상소득	557	744	877	916	1,051	1,112	1,209	1,648	2,203	6,367	1,668
- 퇴직금 등	0	3	12	29	23	25	48	54	189	2,507	289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2007

<부표 3> 소득세 1%p 인상의 세부담 변화

(단위: 천원, 2007년 기준)

소득계층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6,260	14,708	20,728	25,903	30,984	36,240	41,938	49,460	60,943	99,751
경상소득(전)	5,702	13,954	19,838	24,954	29,901	35,093	40,655	47,700	58,424	87,566
근로소득	1,690	6,912	11,601	14,033	18,288	21,818	28,141	33,876	42,793	65,485
비근로소득	4,012	7,042	8,237	10,921	11,614	13,276	12,514	13,824	15,632	22,082
사업소득	797	3,207	4,749	7,148	7,847	10,001	9,269	10,064	11,375	14,983
재산소득	373	693	535	662	653	611	548	994	1,022	3,017
이전소득	2,842	3,142	2,953	3,110	3,115	2,664	2,697	2,767	3,235	4,082
공적보조금	1,299	1,371	1,507	1,537	1,466	1,040	1,000	1,001	1,264	1,511
공적연금	429	556	879	978	969	674	692	741	812	1,070
기타사회보장	870	815	628	560	497	366	309	260	452	441
경상소득(후)	5,703	13,964	19,859	24,990	29,960	35,184	40,770	47,889	58,689	88,080
근로소득세 부담	0	3	7	12	28	44	65	128	188	392
사업소득세 부담	1	7	13	23	30	47	50	61	77	122
세부담 변화 합계	1	10	21	36	58	90	115	189	265	514

주: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규모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율을 기초로 이를 통계청의 표본조사자료인 가계조사자료의 소득규모별 평균실효세율로 가정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적용하여 근사적으로 추정

<국문요약>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김승래 · 김형준 · 이철인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엄밀한 조세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단순히 국제비교 분석이나 ITC지수에만 의존하여 국제적인 평균치 추세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적정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 국제비교나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한계효율비용의 측정에서 나아가 전반적 조세체계의 조정 방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를 살펴보면,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사회후생 감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0.298조원, 0.212조원으로 부가가치세의 0.155조원 대비 각각 1.92배, 1.37배에 이른다. 반면 주요 세목별 증세의 소득분배의 형평성(equity)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1조원 증세의 경우에 각각 0.0264%, 0.1999%가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증세할 경우에는 0.0399%가 늘어나 소득세 대비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세목별 증세의 경우에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단순성 측면에서 종합한 ‘조세-성과 행렬(tax matrix)’을 통하여 조세체계 조정의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률적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의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

는 부가가치세,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가장 우위에 있다. 반대로 일률적인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조세의 형평성 및 단순성 측면에서의 약간의 부(-)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효율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세체계의 적정화는 조세제도의 세목별 효율성, 형평성 및 단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되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하의 대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기타 세제 변화 및 정책지원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 향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요 세목별로 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감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주요 세목 중에서 비용-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소득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함이 필요하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정책의 일차적 목표로서 부각될 경우에 조세누진도를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의 일률적인 세부담 조정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Reforming the Direct-Indirect Tax Mix for Korea

Seung-Rae Kim, Hyungjun Kim and Chul-In Lee

Determining the mix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is a fundamental issue in tax policy design. This study provides a new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direct-indirect tax reforms in Korea. In discussing how the tax system affects economic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efficiency and equity effects of taxes. Therefore we als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arguments for restructuring the Korean tax system.

First, we investigate current patterns of taxation and their recent trends in OECD countries. Then we review the theoretical models and some of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the direct-indirect tax mix. Finally we evaluate various economic effects of changing the mix of direct personal income taxes, corporate income taxes, and consumption taxes in Korea.

The results imply that on efficiency grounds, Korea should rely on lower corporate income taxes and higher consumption taxes for additional revenue, while addressing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personal income taxes.

<著者略歴>

김승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Austin 경제학 박사
미국 Princeton대 우드로윌슨스쿨 연구위원/조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미정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研究報告書 08-08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2008년 12월 22일 인쇄
2008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김승래 · 김형준 · 이철인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 지 사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409-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